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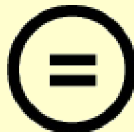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FTA의 관세 양허유형에 따른 품목별 교역량 변화 분석

- 대미 수입 교역량 변화 사례를 중심으로 -



2015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박 은 경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FTA의 관세 양허유형에 따른 품목별 교역량 변화 분석

- 대미 수입 교역량 변화 사례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정 윤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박 은 경

박은경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2월



주심 경제학박사 하명신 (인)

위원 경영학박사 조찬혁 (인)

위원 지리학박사 이정윤 (인)

<국 문 초 록>

FTA의 관세 양허유형에 따른 품목별 교역량 변화 분석

-대미 수입 교역량 변화 사례를 중심으로-

FTA는 교역의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당사국간의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FTA가 체결된 이후 당사국간 교역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FTA 체결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해당 FTA에 의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전체 총량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본 연구는 상품양허 유형 및 특혜 관세율 적용의 최소 단위인 HSK 10단위 차원에서 FTA 전후의 실제 변화를 분석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 이후 양국이 맺은 특혜관세 양허유형에 따라 당사국간 교역량(교역액 및 교역규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FTA가 무역-물류에 미친 효과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한-미 FTA 체결 시 주요 쟁점이 되었던 분야에 대해 살펴보고 한-미 FTA 체결결과에 따른 상품별 관세 양허유형을 살펴 보았다. 한-미 FTA 협정문의 대한민국 양허표조문은 HSK 10단위 기준으로 각 품목별 양허유형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된 품목별로 2011년과 2013년 대미 수입 품목의 교역량 변화를 분석하고, HSK 2단위 기준 품목의 관세 양허유형별 전체 교역량 변화와 각 양허유형별 교역량 변화를 계절적 편차를 최소화하고 관세율 변화의 일관된 시점을 적용하기 위해 2011년과 2013년 각각 1년 동안 한국의 대미국 수입 교역량 변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철폐 기간이 짧은 양허유형의 경우 평균관세율이 낮았으며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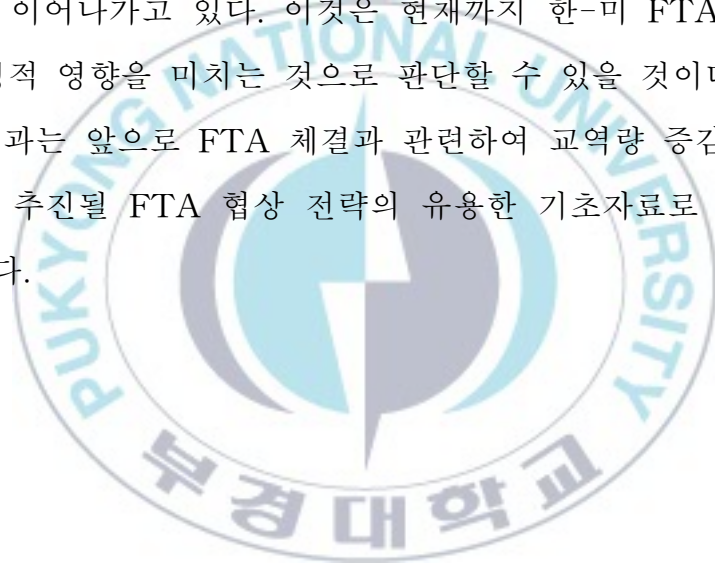
이상 장기철폐 유형의 경우 평균관세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한-미 FTA 체결 후 관세 양허유형에 따른 교역량 변화에서 즉시철폐를 제외한 단기철폐 유형과 중기철폐 유형은 FTA로 인해 교역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철폐 유형의 경우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셋째, 양허유형에 따른 품목별 교역량을 HSK 2단위로 살펴보았는데, 한-미 FTA 체결 시 우리측 가장 큰 쟁점 사항이었던 곡물과 소고기, 돼지고기, 민감 수산물 품목에서는 오히려 교역량 감소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대미 무역수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미 FTA 체결 이후 한-미 간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은 감소하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것은 현재까지 한-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 무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성과는 앞으로 FTA 체결과 관련하여 교역량 증감패턴을 분석·예측하거나 향후 추진될 FTA 협상 전략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 차

표 목차	iii
그림 목차	v
ABSTRACT	v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제3절 논문의 구성	4
 제2장 이론적 배경	 6
제1절 한-미 FTA 체결 배경 및 과정	6
2.1.1 한-미 FTA 체결 배경	6
2.1.2 한-미 FTA 체결 과정	10
제2절 한-미 FTA 주요 쟁점 및 체결 결과	15
2.2.1 한-미 FTA 주요 쟁점	15
2.2.2 한-미 FTA 체결 결과	1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7
2.3.1 FTA 관련 연구 분야 세분화	27
2.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시사점	33
 제3장 한-미 FTA 양허유형 특징 및 관세율 현황	 35
제1절 한-미 FTA의 양허유형 특징	35
3.1.1 한-미 FTA 양허표 조문 현황	35
3.1.2 한-미 FTA 양허유형 구성 및 품목 수 현황	38

제2절 한-미 FTA 양허유형별 관세율 및 대표 품목 현황	42
3.2.1 양허유형별 관세율 현황	42
3.2.2 양허유형별 대표 품목 현황	44
제4장 한-미 FTA 양허유형별 교역량 변화 분석	46
제1절 분석 개요	46
4.1.1 분석대상 자료 수집	46
4.1.2 분석대상 자료 선정	52
제2절 양허유형별 교역량 추이 분석	56
4.2.1 관세 양허유형에 따른 교역량 변화 분석	56
4.2.2 특이품목을 제외한 양허유형별 교역량 변화 분석	59
제3절 양허유형에 따른 품목별 교역량 증감 분석	64
4.3.1 즉시철폐 유형	64
4.3.2 3년균등철폐 유형	66
4.3.3 5년균등철폐 유형	68
4.3.4 7년균등철폐 유형	70
4.3.5 10년균등철폐 유형	72
4.3.6 12년균등철폐 유형	75
4.3.7 15년균등철폐 유형	76
4.3.8 무관세지속 유형	77
4.3.9 2014철폐 유형	78
4.3.10 양허제외 유형	79
제5장 결론	80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80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82
* 참고문헌	83

표 목 차

<표 2-1> 한-미 FTA 체결 당시 한국의 대미 교역현황	8
<표 2-2> 한-미 FTA 체결 과정	11
<표 2-3> 한-미 FTA 8차 본협상 결과 주요 쟁점분야	18
<표 2-4>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20
<표 2-5> 한-미 자동차분야 특징	21
<표 2-6> 대미 자동차 분야 수입·수출 현황	22
<표 2-7>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24
<표 2-8> 섬유분야 양허협상 결과	25
<표 2-9> FTA 관련 대표적인 연구 논문 유형	27
<표 2-10> 한-미 FTA 관련 산업분야별 영향에 관한 연구 사례	28
<표 2-11> 한-미 FTA 성과에 관한 연구 논문	31
<표 2-12> 한-미 FTA 성과에 관한 인터넷자료 외	32
<표 3-1> 한-미 FTA 협정문 대한민국 양허표 조문 일부(발체)	36
<표 3-2> 한-미 FTA 협정문 대한민국 양허표 조문 일부(예시)	37
<표 3-3> 한-미 FTA 협정문 대한민국 기준 공동·개별 양허유형 현황 ·	39
<표 3-4> 한-미 FTA 협정문 대한민국 기준 양허유형별 품목 수 현황 ..	40
<표 3-5> 양허유형별 관세율 현황	42
<표 3-6> 우리측 양허유형별 품목 현황	45
<표 4-1> 2011년, 2013년 한-미 간 수입 품목별 증량 현황	47
<표 4-2> 연도별 한-미간 수입·수출 품목수(HSK 10단위 기준)	48
<표 4-3> 2013년 기준 양허유형별 수입거래 품목수 및 비율	49
<표 4-4> 대미 수출입 현황 및 무역 수지	50
<표 4-5> 부속서 대한민국 양허표 기준 및 2011, 2013년 수입품목 기준 비교표	53
<표 4-6> 분석 데이터 품목 제외 기준	54

<표 4-7> 양허유형별 제외품목 및 분석대상 비교	55
<표 4-8> 2011, 2013년 양허유형별 수입중량 및 비중	57
<표 4-9> 2011, 2013년 양허유형별 수입금액 및 비중	57
<표 4-10> 품목 제외 후 양허유형별 중량 및 금액 증감 현황	58
<표 4-11> 즉시철폐 품목 중 추가제외 품목(교역액 비중 상위 4개 품목)	60
<표 4-12> 양허유형별 수입중량 및 수입액 증감여부(일부품목 제외 후)	61
<표 4-13> 즉시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가 상위 10개 품목	64
<표 4-14> 즉시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가 하위 10개 품목	65
<표 4-15> 3년균등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가 상위 10개 품목	66
<표 4-16> 3년균등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가 하위 10개 품목	67
<표 4-17> 5년균등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가 상위 10개 품목	68
<표 4-18> 5년균등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가 하위 10개 품목	70
<표 4-19> 7년균등철폐 유형 품목별 증감 현황	71
<표 4-20> 10년균등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가 상위 10개 품목	73
<표 4-21> 10년균등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가 하위 10개 품목	74
<표 4-22> 12년균등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감 품목 현황	75
<표 4-23> 15년균등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감 품목 현황	76
<표 4-24> 무관세지속 유형 수입금액 증가 상위 10개 품목	77
<표 4-25> 무관세지속 유형 수입금액 증가 하위 10개 품목	78
<표 4-26> 2014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감 품목 현황	79
<표 4-27> 양허제외 유형 수입금액 증감 품목 현황	79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5
<그림 3-1> 양허유형별 품목 수 비율	41
<그림 3-2> 양허유형별 평균관세율	43
<그림 3-3> 대미 수출입 현황 및 무역 수지	50
<그림 4-1> 양허유형별 대미 교역액 증감 현황	62
<그림 4-2> 상위 10개 품목 교역금액 증가 그래프	69
<그림 4-3> 상위 10개 품목 교역금액 증가율 그래프	69



**An Analysis on a Change in Item-based Trading Volume according to
Tariff Concession Type in FTA**

- Focusing on the Change Cases in Import Trading Volume with the United States -

Park, Eun Kyou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 Logistics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FTA ultimately aims to remove tariffs that can be said to be a barrier of trade, thereby coming to have great influence upon the trade between the countries directly involved. The trade between the state parties are being shown to actually grow following the FTA conclusion.

In case of the Korea-Chile FTA that was concluded for the first time in our country in 2004, the export and the import in 2007 when is 3 years later were up by 339.8% and 116.4%,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year in 2004 that is the effective year in FT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trading volume changes according to a tariff concession type in FTA.

A research is being performed actively that analyzed a change in the trading volume with the FTA countries in the passage of long term after having been concluded conventionally. However, a research that analyzed a change in the trading volume of FT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th the progress in about 2 years following the effectiveness as of the year in 2014 after the effectiveness of FTA on March 15, 2012 can be said to be insignificant yet compared to other FTA countries. Especially, a research that analyzed a change in the trading volume according to a change in tariff concession type of FTA can be considered to be a field that still requires diverse researche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substantially analyze the effect of FTA on the trading logistics by specifically examining how the trading volume(trading amount and trading scale) between the countries directly involved changed according to a preferential tariff concession type that was concluded between both countries following the FTA conclusion.

The previous researches that have analyzed the effect of the FTA conclusion so far are focusing on analyzing the macro-economic ripple effects based on the corresponding FT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otal amount. Yet this study has the biggest significance in analyzing an actual change between before and after FTA in the dimension of HSK unit 10, which is the minimum unit in a type of the commodity concession and in the application of preferential tariff rate.

This study aimed to grasp the influence of FTA through analyzing a change in substantial trading volume(trading amount and trading scale) according to a change in a tariff concession type of FTA.

This performance is expected to be able to analyze and predict the fluctuation pattern in the airport-port export & import freight volume related down the road or to be possibly utilized as useful basic data for a strategy for FTA talks that will be driven hereafter.

This study first examined about a field that had been the main issue given the Korea-U.S. FTA conclusion and figured out the commodity-based tariff concession type according to the outcome of the Korea-U.S. FTA conclusion.

The concession-table provis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South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are segmented a concession type by each item based on HSK unit 10. An analysis was made focusing on the change cases in South Korea's import trading volume with the United States for 1 year, respectively, in 2011 and in 2013 in order to analyze a change in the trading volume of the import items with the United States in 2011 and 2013 by item that is segmented in this way, to minimize seasonal deviation as for a change in the whole trading volume by tariff concession type in items based on HSK unit 2 and as for a change in the trading volume by each concession type, and to apply the consistent point in a change of tariff rat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FTA(Free Trade Agreement)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으로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하고 장기적으로 경제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FTA 체결로 인해 교역이 확대되고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이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FTA는 전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 역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칠레, 싱가포르,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등 48개 국가와의 FTA가 발효되었고, 2013년 콜롬비아와 호주, 2014년 현재 중국과도 협상 개시 30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되어 FTA 발효 예정 중에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발효국과 우리나라와의 교역비중은 곧 전체 교역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FTA 체결국가가 늘어나고 FTA가 발효된 국가와의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¹⁾

FTA는 교역의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당사국간의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FTA가 체결된 이후 당사국간 교역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2004년 우리나라

1) 전찬영, 이수영, 정경선(2013), 「FTA가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1

2) 남기찬 · 남형식 · 강달원(201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부산항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7권 제6호, pp.681~682

가 처음으로 체결한 한-칠레 FTA의 경우 FTA 발효년도인 2004년 대비 3년 후인 2007년에 수출과 수입은 각각 339.8%, 116.4%가 증가하였다.³⁾

본 연구에서는 FTA의 양허유형에 따라 품목별 교역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에 체결되어 장기간이 지난 FTA 체결국과의 교역량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2012년 3월 15일 FTA가 발효되어 현재 발효 후 기간이 2년 남짓 경과한 한-미간 FTA의 교역량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다른 FTA 체결국가에 비해 아직 그 연구가 미미하다고 하겠다. 특히 FTA의 관세 양허유형에 따른 교역량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FTA 체결 이후 양국이 맺은 관세 양허유형에 따라 당사국간 교역(및 물동량)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FTA가 무역-물류에 미친 효과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FTA 체결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해당 FTA에 의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전체 총량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본 연구는 상품양허 유형 및 특혜 관세율 적용의 최소 단위인 HSK 10단위 차원에서 FTA 전후의 실제 변화를 분석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금번 연구에서는 FTA의 관세 양허유형에 따른 실질적인 교역량(교역액 및 교역규모) 변화 분석을 통해 FTA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관련 수출입 공항-항만의 물동량 증감패턴을 분석·예측하거나 또는 향후 추진될 FTA 협상 전략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FTA 포털>FTA 통계정보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대상은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FTA 협정 중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관세 양허유형에 따른 품목별 교역량(교역액 및 교역규모) 변화이며 분석비교 시점은 계절적 편차를 최소화하고 관세율 변화의 일관된 시점을 적용하기 위해 2011년과 2013년 각각 1년 동안 한국의 대미국 수입품목 9,498개의 중량 및 금액 변화를 HSK 10단위 품목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FTA 체결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해당 FTA에 의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전체 총량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본 연구는 상품 양허유형 및 특혜관세율 적용의 최소 단위인 HSK 10단위 차원에서 FTA 전후의 실제 변화를 분석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금번 연구에서는 우선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상품양허안의 대한민국 양허표 조문을 기초로 하여 품목별 교역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한-미 FTA 협정문의 대한민국 양허표 조문을 보면 HSK 10단위 기준으로 각 품목별 양허유형이 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세분화된 품목별로 2011년과 2013년 대미 수입품목의 교역량(수입금액 및 수입중량)을 대입하여 HSK 10단위 기준의 양허유형별 교역량 추이 변화를 살펴보고, HSK 2단위 기준으로 양허유형에 따른 품목별 교역량 증감현황과 HSK 10단위의 주요 세부 품목별 현황을 같이 분석해 보았다.

제3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살펴보고 한-미 FTA 체결 배경 및 과정을 알아보고 한-미 FTA의 주요 내용(쟁점)과 체결결과를 기술하고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제3장 제1, 2절에서는 우선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상품양허안의 대한민국 양허표 조문을 기준으로 한-미 FTA의 양허유형의 특징을 파악해 보고 양허유형별 품목 수, 전체품목 대비 품목 수 비율과 양허유형별 관세율 및 양허단계별 주요품목에 대해 우리측과 미국측을 비교하였다.

제4장 제1절에서는 연구하고자 하는 분석 대상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한-미 FTA 상품양허안 조문-대한민국 양허표를 알파벳으로 되어있는 양허유형을 즉시철폐, 2년균등철폐 등으로 분석하기 쉽게 변환하였다. 또한 대미 수입에 대해 HSK 10단위 기준으로 품목별 수입중량 및 수입금액 자료를 확보하였다. 제4절에서는 제3절에서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대상 자료를 최종 선정하였다.

제4장 제2절에서는 실질적으로 2011년 대비 2013년 대미 수입자료 및 양허유형, 관세율 자료로 우선 각 양허유형에 따른 전체 교역량 변화를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HSK 10단위 기준 품목을 HSK 2단위 기준으로 묶어서 양허유형에 따른 품목별 교역량 증감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2장 이론적 배경

제2장에서는 제1장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미 FTA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관련 참고자료 및 문헌을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제1절에서는 한-미간 FTA 체결 배경 및 과정을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한-미 FTA 체결 주요쟁점을 파악하였으며 제3절에서는 FTA와 관련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제1절 한-미 FTA 체결 배경 및 과정

2.1.1 한-미 FTA 체결 배경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⁴⁾.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⁵⁾ 협상이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4) 산업통상자원부>정책브리핑>FTA추진(<http://www.motie.go.kr>)

5)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다.

둘째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 잡은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김진석(2007)의 연구⁶⁾에서는 한·미 FTA의 추진배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대내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전의 노동집약적 기업형태에서 자본집약적 기업형태로 변화하는 시기에 놓여 있었고 후발공업국인 중국과 인도의 급속한 추격으로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의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은 형국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성장의 모멘텀으로 삼아 안으로는 기존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불러일으키며, 밖으로는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먼저 선점하여 이익을 취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세계는 WTO와 RTA(Regional Trade Agreement:지역무역협정)를 통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나라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경제성장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비추어 볼 때 한·미

6) 김진석(2007), 「한·미 FTA의 진행현황과 대응전략 : 국내 각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및 대응책」,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5~7

FTA 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선택이었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양자 FTA를 통한 무역확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홍식 등(2006)의 연구⁷⁾에서는 한-미 FTA 추진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로, 한-미 FTA를 통해 우선 한국은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은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이자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외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한미 FTA를 통해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2-1>의 한미 FTA 체결 당시 한국의 대미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수출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표2-1> 한미 FTA 체결 당시 한국의 대미 교역현황

(단위: 천불(USD 1,000))

기간	수출건수	수출금액(천\$)	수입건수	수입금액(천\$)	무역수지
1998	480,535	22,805,106	444,650	20,403,276	2,401,830
1999	572,652	29,474,653	609,895	24,922,344	4,552,308
2000	621,658	37,610,630	709,993	29,241,628	8,369,002
2001	610,552	31,210,795	666,458	22,376,226	8,834,569
2002	669,614	32,780,188	727,373	23,008,440	9,771,749
2003	665,210	34,219,402	730,365	24,814,365	9,405,036
2004	665,251	42,849,193	721,136	28,782,405	14,066,788
2005	616,448	41,342,584	785,583	30,585,837	10,756,748
2006	620,064	43,183,502	834,881	33,654,140	9,529,362
2007	604,462	45,766,102	921,765	37,219,301	8,546,802

(자료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7) 이홍식, 이창수, 이경희(2006),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2~4

둘째로, 한미 FTA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 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신인도 개선 시 외국인투자 증대뿐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을 감소시키고 해외차입이 활성화 되어 국내투자확대 효과가 발생한다. 한미 FTA로 산업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환경이 개선될 경우 동북아 시장을 겨냥한 FDI 유입이 급증할 것이다.

셋째로,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으로 한국이 미국의 FTA 대상국 중 최대 공업발전국인 점을 활용하여 고도기술 투자유치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기업활동이 생산사슬(Production Chain)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과 벤처자본이 IT 및 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 기술과 결합하여 상업화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로,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향후 경제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하며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바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 서비스산업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즉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 신성장동력의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절실한 우리 경제로서는 한·미 FTA를 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입과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로, 통상마찰의 완화이다. 한미 FTA 협상이 추진되면 협상과정에서 한미간에 잠재되어 있는 통상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이들 중 상당 부분이 FTA 하에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간 통상마찰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 체결로 미국은 종래의 일방적 무역조치 대신에 쌍무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소함에 따라 통상마찰의 수위와 강도는 한결 완화된다고 하겠다.

여섯째로,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함과 동시에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고 경영,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미국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설립을 촉진하고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금융, 물류 및 사업서비스분야의 미국기업을 유치하여 향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한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 가능성 증대로 미국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적 관계 강화이다. 미국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시하는 FTA 전략을 구사하여, 한미 FTA의 체결은 양국 간의 외교·안보적인 관계도 강화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질서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1.2 한-미 FTA 체결 과정

한미 FTA의 체결 과정을 살펴보면⁸⁾ 1988년 미국상원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아태지역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간 FTA 체결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 한국, 대만을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거명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미 FTA가 바람직하나 한국 내 반미감정이 높아 정치적인 손실이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1999년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 Korea)가 클린턴 미대통령에게 한미 FTA 체결 추진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미 상원 금융위원회 의장인 Baucus 상원의원이 한국과의 FTA 추진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다. 2001년 양국 재계는 제14차 한미재계회의에서 양국 간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 양자

8) 권용진(201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제약기업의 글로벌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2

간 투자협정) 및 FTA 조기 타결을 촉구한 바 있으며 2004년 9월 Zoelick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농업분야 개방을 전제로 미국이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이 일본보다 우선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004년 11월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정부간 FTA 예비협의를 진행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2005년 3~5월 양국 정부 간 사전 실무점검회의가 3차례 개최되었다. 같은 해 6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 시 Portman USTR 대표는 FTA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주요 통상 현안 사전해결의 한국측 노력을 강조하였다. 11월에는 한국측의 통상현안 사전해결을 전제로 연내 FTA 협상 착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2005년 중 6차례의 한미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된 결과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협상이 공식 출범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4월17일에서 18일 중 한미 FTA 제2차 비공식 사전 준비협의회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어 양측은 17개 분과 설치에 합의하였으며 제1차 협상이 6월 5일 개최되어 제8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FTA는 2007년 4월 2일 극적으로 타결되게 되었다. 이후 추가협상을 거쳐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전격 처리되었으며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이후 4년 7개월만이다. 이후 2012년 3월 15일 양국 간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표2-2> 한-미 FTA 체결 과정⁹⁾

2014년	2014.01.01 개정된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HS 2012 기준) 발효
2013년	2013.10.05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발리)
2012년	2012.12.24 한미 FTA 섬유원산지 규정에 관한 각서 교환 2012.05.15 -18 제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워싱턴)

9) <http://ftahub.go.kr/us/>, 저자 가공 정리

	2012.03.15 발효 2012.02.21 발효일자 합의(외교 공한 교환) 2012.02.21 발효일자 합의(외교 공한 교환) 2012.02.19-20 한-미FTA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약(시애틀) 2012.01.27-01.28 한-미 FTA 이행점검협약 (LA)
2011년	2011.12.19-20 한-미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약 (워싱턴) 2011.12.05-06 한-미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약 (워싱턴) 2011.11.22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1.10.21 미 오바마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2011.10.12 미 상·하원 본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10.11 미 상원 재무위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10.05 미 하원 세입위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10.03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 2011.09.16 한-미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 2011.06.03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11.05.04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1.02.10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2010년	2010.11.30-12.03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 - 12.3 추가협상 타결
2009년	2009.04.2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2008년	2008.10.08 한미 FTA 비준동의안 18대 국회 제출
2007년	2007.09.07 한미 FTA 비준동의안 17대 국회 제출 2007.06.30 한미 FTA 서명(워싱턴) 2007.06.21-22 추가협약(서울) 2007.05.29-06.06

	법률검토회의(워싱턴) 2007.04.02 한-미 FTA 협상타결 2007.03.26-04.02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 (서울) 2007.03.19-22 한-미 FTA 고위급 협상 개최 (워싱턴) 2007.03.08-12 한-미 FTA 제 8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2007.02.11-14 한-미 FTA 제 7차 공식협상 개최 (워싱턴) 2007.01.15-19 한-미 FTA 제 6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2006년	2006.12.04-08 한-미 FTA 제 5차 공식협상 개최 (몬타나) 2006.10.23-27 한-미 FTA 제 4차 공식협상 개최 (제주) 2006.09.06-09 한-미 FTA 제 3차 공식협상 개최 (시애틀) 2006.07.10-14 한-미 FTA 제 2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2006.06.27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2006.06.05-09 한-미 FTA 제 1차 공식협상 개최 (워싱턴) 2006.04.17-18 한-미 FTA 제 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 2006.03.06 한-미 FTA 제 1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 2006.02.03 한-미 FTA 추진 발표 (워싱턴 미 상원의사당) - 본부장-USTR대표 공동 기자회견 2006.02.02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및 결정 2006.01.31 본부장-Portman USTR 대표 면담 (워싱턴)
2005년	2005.11.16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부산) 2005.10.11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네바) 2005.09.20 한-미 통상장관회담 (워싱턴) 2005.09.19-21 본부장 방미, 주요 정부관계자 면담 2005.09 미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정부 내부 회의, 외부전문가 자문, 설문 조사 등을 통한 검토

	전문가 연구 :정부 발주 연구용역 포함, 10여개의 국내전문가 연구 및 세미나, 공청회진행 설문조사 : 04.11월 전경련(87%),12월 무역협회(75%) 및 한국갤럽(80%),'06.2월 중기협(80%)의 한-미 FTA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대상 대부분이 한-미 FTA 체결에 찬성 (괄호는 찬성비율) 2005.07.24-28 본부장 방미, 주요 상하원의원 및 업계 설득 2005.06.03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주) 2005.05.02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파리) 2005.04.28-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3차 회의 개최 (워싱턴) 2005.03.28-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2차 회의 개최(워싱턴) 2005.02.03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1차 회의 개최(서울)
2004년	2004.11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합의 2004.05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관심 표명
2003년	2003.08 'FTA 추진 로드맵'마련 -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

제2절 한-미 FTA 주요 쟁점 및 체결 결과

2.2.1 한-미 FTA 주요 쟁점

한미 FTA는 한국 정부와 재계 등 관련 이해관계 그룹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전명적 개방과 경쟁을 통해 한국 산업 전반의 체질개선과 개별 기업, 산업들의 경쟁력 확보로 21세기 선진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논리에 맞춰서 본 협상이 추진되었다.¹⁰⁾ 2006년 6월 5일부터 2007년 4월 2일까지 11개월간 총 8차례의 본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때 미국정부의 핵심쟁점은 미국산 자동차분야, 쇠고기 시장 및 농산물 분야, 의료 및 영화, 지적재산권 분야 등의 개방의 폭과 ISD 조항 포함 여부에 대한 사항이었다. 반면, 한국정부의 핵심쟁점 사항은 쌀 시장 개방 불가, 개성공단 역외가공제품의 역내가공제품 인정, 쇠고기 시장 개방의 유보 등에 대한 사항이었다.

(1) 협상 초반 주요 쟁점 사항

한미 FTA 협상 초반 주요 쟁점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상품무역분과는 양허단계를 즉시철폐·3년·5년·10년·기타 5단계로 구분하여 기타에는 한국측 민감, 취약 품목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의약품의 경우 한국측은 약제비 비중이 30%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포지티브 리스트¹¹⁾ 방식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측은 미국 신약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포지티브방식 하에서는 한국시장 진출이 어려워 철회를 요구했다. 이 중 핵심쟁점인 자동차의 경우 미국측은 현행 배기량 기준 세제 변경을 요구하고

10) 주해돈(2013), 「한·미 FTA 체결과 비준과정에서의 쟁점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31~36

11)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을 나타냄

자동차 인증 표준 등에서 국내외기업 차별 철폐를 요구하였다.

둘째, 농산물분과와 섬유분과의 경우 쌀의 경우 한국은 논의 불가 방침이었으나 미국측은 한국시장 접근성 확대를 요구하였다. 섬유의 경우 한국측은 5년 이내 모든 해당품목 관세 철폐를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및 원사 원산지규정을 고수하였다.

셋째, 서비스 분과의 경우 미국측은 한국의 교육 의료시장 개방 및 수도·전기 등 공공분야 개방에 관심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온라인 교육시장,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시험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철폐 또는 50% 이상으로 확대를 요구하였다.

넷째, 투자분과에 대해서는 일시적 세이프가드(긴급제한조치)에 대해 양국간의 의견차가 있었다.

다섯째,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과 관련하여 한국측은 역외가공방식에 관한 기존 FTA 사례를 소개하고 원산지 인정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설명하였으나 미국측은 개성공단 한국 원산지 인정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중 농업분과에서 소고기의 경우 미국측은 뼈가 붙은 쇠고기와 부산물까지 한국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2) 협상 막바지 주요 쟁점 사항

양국 간의 가장 큰 ‘쟁점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 분과는 총 11개 분과로 농산물분과, 자동차분과, 의약품분과, 섬유분과, 금융분과, 서비스분과, 투자분과, 지적재산권분과, 무역구제분과, 원산지분과, 노동분과 등이다.¹²⁾

쟁점분야를 살펴보면 농산물분과에서는 미국측이 쇠고기 위생검역 해결 요구·예외 없는 전 품목 관세철폐와 개방을 요구하였으며 우리측에서는 쌀·오렌지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한 예외 인정을 고수하였다. 자동차분과에서는 양측 모두 표준작업반 설치 내용 합의·관세철폐시한에 합의하였으나 우리측은 ‘즉시’, 미국측은 한국 세제 개선 이후 이행과 자동차 원산지 비율, 기법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 장착을 주장하였다. 의약품 분과에서는 미국측이 특허권 연장 및 자료 독점권과 신약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섬유분과에서는 우리측이 섬유 양허안 개선과 원사기준 예외 및 관세특혜할당을 요구하였으며 미국측은 강도 높은 세이프가드와 우회수출방지책을 요구하는 등 이견을 보였다. 이밖에 금융분과, 투자분과, 원산지 분과에서도 양측의 요구는 팽팽히 이어졌다.

한미 FTA 본협상 결과 주요 쟁점분야는 <표 2-3>과 같다.

12) 주해돈(2013), 전계서, pp.50~51

<표 2-3> 한-미 FTA 8차 본협상 결과 주요 쟁점분야

협상 결과	분 과	내 용
쟁점 분야	농산물	(미) 쇠고기 위생검역 해결 요구 / (미) 예외없는 관세철폐와 개방 (한) 쌀, 오렌지 등 민감 농산물 예외 인정해야 함
	자동차	(한·미) 표준작업반 설치 내용 합의 관세철폐시한 (한) 즉시, (미) 한국 세제 개선에 따름 자동차 원산지 비율, 기법,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 장착
	의약품	(미) 특허권 연장 및 자료독점권 요구 / (미) 신약 최저가 보장 요구
	섬유	(한) 섬유 양허안 개선, 원사기준 예외, 관세특혜할당요구 (미) 강도 높은 세이프가드, 우회수출방지책 요구
	금융	(미) 우체국보험 FTA 협정 적용 요구
	서비스	법률·회계서비스 시장 단계적 개방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직 상호 인정 협의 방송·통신 융합 제외한 87개(미측 측 전자, 해운, 원자력, 어업, 군수 등 19개) 현행 유지 (한) 일시 세이프가드 인정요구
	투자	(미) 외국방송 더빙 허용, 방송콘텐츠 쿼터제 완화
	지적 재산권	(미) 테이블 TV PP, 통신사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미) 저작권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한) 어업, 연안해운 개방요구
	무역구제	(한) 무역구제협력위 등 요구 (미) 법률개정 수반조치 불가
	원산지	(한) 개성공단제품 국산인정 요구 (미) 한미 FTA는 한·미 영도내 제품 대상
	노동	(한) 공중의견 제출제도 남용방지안 마련

<자료 : 주해돈(2013), 전거서, p.53>

농업분야에서는 한국측의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재개 일정에 대한 서면 약속 불가 입장과 미국측의 수입재개 일정 확약 요구가 팽팽히 맞섰다. 한국측이 향후 쇠고기 시장 개방 일정을 약속해 주는 대신 오렌지 등에 대한 한국의 관세 폐지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협상 끝에 쇠고기는 현행 40%인 관세가 15년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뼈 있는 쇠고기’의 경우 검역문제는 국제수역

사무국(OIE)의 광우병 평가등급에서 미국이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등급을 받을 경우 한국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자체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수입 위생검역 절차를 개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한국측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당초 미국측이 3,000cc이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와 함께 2.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3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2010년 12월 3일 타결된 추가협상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철폐하는 시한을 5년으로 늦추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미국 내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자가인증을 인정받고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미국산 자동차의 연간 판매 대수를 업체당 6,500대에서 2만5,000대씩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측이 미 자동차업계의 반발을 반영해 강력히 요구했던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측이 결국 추가 양보한 것이다.

2.2.2 한-미 FTA 체결 결과

2006년 6월 5일부터 2007년 4월 2일까지 11개월간 총 8차례의 본협상 진행과 2010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된 추가협상 결과인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현황은 <표 2-4>와 같다.

한-미 FTA의 상품양허에서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였다.

<표 2-4>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 관세율

단계	우리측	미측
즉시	자동차부품(3~8), 크실렌(5), 통신용 광케이블(8), 항공가진(3), 에어백(8), 전자계측기(8), 백미러(8), 디지털프 로젝션TV(8) 등	자동차부품(1.3~10.2), LCD모니터 (5), 캠코더(2.1), 귀금속장식품(5.5), 폴리스티렌(6.5), 컬러TV(5), 기타신발 (8.5), 전구(2.6), 전기엠프(4.9)등
3 년	요소 (6.5), 실리콘오일 (6.5), 폴리우레탄(6.5) 치약(8), 향수(8), 골프채(8) 등	DTV(5), 컬러 TV(5), 골프용품 (4.9), 상들리에(3.9) 등
5 년	승용차(8), 고주파증폭기(8), 알루미늄판(8) 안전면도날(8), 환자감시장치(8), 면도기(8), 조제세제(6.5), 헤어린스(8), 바다가재(20) 등	승용차(2.5), 타이어(4), 7품의류(6), 폴리에테르(6.5), 스피커(4.9) 등
10년	기초화장품(8), 페놀(5.5), 초음파 영상진단기(8), 볼베어링(13), 콘택트 렌즈(8) 등	전자레인지(2), 세탁기(1.4), 모조장신구(11), 폴리에스테르수지 (6.5), 베어링(9), 섬유건조기(3.4), 화물자동차(25) 등
10년 비선형	아귀(10, 냉동), 가오리(10, 냉동), 볼낙(10, 냉동), 오징어(24, 냉동), 공치(36, 냉동), 꽃게(20-산 것, 신선·냉장, 냉동), 파티클보드(8), 섬유판(8), 합판(12) 등	참치캔(6~35), 세라믹타일 (8.5/10), 철강(4.3~6.2)
10년 이상	명태(30, 냉동), 민어(63, 냉동), 기타넙치(10, 냉동), 고등어(10, 냉동)	특수신발(20~55.3)

<자료 : 외교통상부(2011),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pp.10>

본 연구에서는 관세 양허유형에 따른 품목별 교역량을 분석하고자 함으로 한-미 FTA의 체결 결과를 상품분야, 농업분야, 섬유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상품 분야

한미 양국은 100% 관세철폐, 90% 이상 조기철폐로 인한 양국 간 시장접근성을 제고시켰다.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달성했다. 이는 향후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 간 실질적인 교역증대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관세철폐를 통해 우리의 대미 수출주력품목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잠재적 품목의 시장진입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자동차의 경우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 상호 4년 후 관세 철폐(2010년 12월 추가협상 결과)하기로 하였는데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4년 후 한꺼번에 철폐하고 한국은 관세 8%를 발효 시 4%로 인하 후 4년 후 한꺼번에 철폐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관세 2.5%를 4년간 균등 철폐하고 한국은 관세 8%를 발효 시 4%로 인하 후 4년간 균등철폐하기로 했으며 화물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2.5%의 관세를 7년간 현행유지 후 2년간 균등철폐하고 한국은 10%의 관세를 즉시철폐 했다.

<표 2-5> 한·미 자동차분야 특징

구분	우리측	미국측	비고
자동차 시장 규모	147만대	1,155만대	미국측이 우리의 8배
자동차 관세	8%	2.5%	우리측이 미국의 3배이상

※ 우리 자동차의 미국내 시장점유율은 10%에 육박

※ 현대·기아차 미국시장 점유율 : (2010년) 7.7%, (2011년4월) 9.4%, (2011년5월) 10.1%(5위)

<자료 : 외교통상부(2011), 전게서, p.7>

<표 2-6> 대미 자동차분야 수입·수출 현황

구분		수출	수입	비고
대미 수출·수입 규모		51만대	1.3만대	수출이 수입의 40배
2010년	대미 완성차 수출·수입액	66억불 (51만3천대)	3.6억불 (1만3천대)	약 18배 차이 (39배 차이)
	부품 수출액	41억불	4억불	10배 차이
2008~ 2010년 (연평균)	자동차	약 64억불	-	미 승용차 관세 : 2.5% 미 화물자동차 관세 : 25%
	타이어	8.8억불	-	미 관세 : 4%

<자료 : 외교통상부(2011), 전세서, p.7>

우리측 민감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 장기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TRQ 등을 도입하여 민감성 확보하였는데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의 장기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TV, 컬러TV의 경우 3년균등철폐 품목으로 정했고 전자레인지, 철강, 참치캔의 경우 10년균등철폐 품목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기적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 예상품목으로는 승용차(일), LCD모니터(중, 일), 캠코더(일), TV카메라(일), 오디오앰프(중), 폴리스티렌(멕시코), 금속절삭기(일), 이어폰(중), 예폭시수지(캐), 칼라TV(멕시코) 등이다.¹³⁾

(2) 농업 분야

농업분야를 살펴보면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 물량기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¹⁴⁾ 제도를 도입했다.¹⁵⁾ 우리측이 요구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반영하였고 일부 핵심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일정기간 존속하

13) 상품별 ()는 주요 경쟁국을 의미함

14)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하여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의 하나

15) 외교통상부(2007),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pp.4~5

기로 했다. 이는 당해년도 수입량이 사전에 정해진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사과(7~10년균등철폐), 고추(15년균등철폐), 마늘(10년균등철폐), 양파(15년균등철폐), 인삼(15년균등철폐) 등의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유지(최장 3년)하는 것으로 하였다.

쌀 및 쌀관련 제품은 추가 개방 없이 관세양허¹⁶⁾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였다.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방식¹⁷⁾을 도입했다. 수확기 오렌지(50%), 탈지·전지분유(176%), 연유(89%), 식용감자(304%), 식용대두(487%), 천연꿀(243%)의 경우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것(5년이후 복리증가(TRQ))으로 합의했다.

감자 및 대두의 경우 식용과 가공용으로 세 번을 분리하여 국내산과 대체관계가 큰 식용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과일류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거나 세 번을 분리하여 국내에서 주로 생산·소비되는 품종은 장기 관세철폐기간을 확보하였다. 오렌지, 포도는 수확기와 비수확기로 구분하여 우리 수확기 동안에는 오렌지의 경우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5년이후 복리증가(TRQ)) 포도의 경우 관세를 7년에 걸쳐 철폐하고 사과, 배(10년균등철폐)는 국내에서 주로 생산·유통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20년 철폐, 나머지는 10년 철폐기간을 확보하였다.(사과의 경우 23년 동안 세이프가드 유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민감품목 및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고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급증 시 완충장치로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쇠고기(15년), 감귤, 고추, 마늘, 양파(15년 이상), 인삼(18년), 배, 사과(20년 이상) 등 기본적으로 관세가 높거나 민감한 품목은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을 확보했다.

16) 관세양허는 국가 간 관세,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다

17) 현행관세 유지 및 쿼타 제공, 관세 장기 철폐, 계절관세,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등

<표 2-7>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양허 유형	주요 품목
양허제외	쌀
현행관세, 수입쿼타	오렌지(성품하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영꿀
계절관세	포도, 칩용 감자
세번분리, 장기철폐	사과, 배
장기철폐 세이프가드	쇠고기, 돼지고기(냉장), 고추, 마늘, 인삼, 보리, 맥주맥·맥아, 전분
15년	호두(미탈각), 밤, 잣, 감귤, 송이버섯, 표고버섯, 필터담대
12년	닭고기(냉동가슴살, 날개) 냉동양파, 수박, 보조사료
10년	복숭아, 감, 단감, 감귤주스, 잎담배
9년	딸기
7년	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팥콘용 옥수수
2014철폐	돼지고기
6년	옥수수유, 호두(탈각)
5년	완도콩, 감자(냉동), 토마토주스, 오렌지주스(기타), 위스키, 브랜디
3년	해조류
2년	아보카도, 레몬
즉시철폐	오렌지주스(냉동), 산동물,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아몬드

<자료 : 외교통상부(2007), 「한·미 FTA 분야별 최종협상 결과」, p.6>

(3) 섬유 분야

섬유분야 협정문 주요내용으로는 관세철폐 스케줄에 따라 상대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¹⁸⁾ 뿐만 아니라 섬유 생산을 위한 투입재 공급 부족 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60일 내 개정 노력기로 합의하고 기타, 최소기준, 세트규정 등 특별 원산지 원칙을 도입했다.

우회수출 방지를 위하여 원산지 검증에 관련된 세관협력을 강화했는데 수출품에 대해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고 미국 세관에서 한국기업의 우회우려가 없음을 사전 입증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관세철폐로 인한 완충장치로 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이는 WTO 세이프가드보다는 완화된 발동요건이며 품목별 관세철폐 후 10년간 발동 가능하다.

섬유분야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으로는 양국은 섬유제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기준)가 즉시철폐 된 것이다. 즉시철폐비율은 미국측이 품목수 기준 87%(수입액 기준 61%), 우리측이 품목수 기준 97%(수입액 기준 72%)이다.

<표 2-8> 섬유분야 양허협상 결과

구분	우리측	미국측
즉시	데님, 폴리아미드 장섬유사	스웨터, 양말, 화섬 단섬유
3년	셀룰로오스 장섬유, 유리섬유	-
5년	폴리아미드 강력사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 남자면셔츠
10년	-	화섬편직물일부, 타이어코드 직물

<자료 : 외교통상부(2007), 전제서, p.28 >

18) 18) 외교통상부(2007), 전제서, pp.7~10

섬유산업 FTA 체결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제고, 대미 수출환경 개선으로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과 전반적인 섬유산업 구조 혁신의 기회로 현재 의류분야는 단순생산 후 납품하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수출 위주이나 FTA를 계기로 독자 브랜드를 갖고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 제조업자개발생산) 수출방식으로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관절차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기업 부담이 감소하여 물류측면의 대미 수출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3.1 FTA 관련 연구 분야 세분화

선행연구 검토 결과 FTA에 관한 연구는 분야별로 1984년부터 2014년 12월 현재까지 961건에 달한다. 이 중 FTA 효과와 관련한 연구는 125건이며, FTA 성과와 관련한 연구는 34건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미 FTA와 관련한 연구는 179건이다.

최근 10년간의 연구 논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각각의 산업분야별 영향에 관한연구, 무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FTA 추진 전략관련 연구, 법적·제도적 관점에서의 연구, 무역구조 분석 연구, 원산지규정관련 연구가 주를 이뤘다.

<표 2-9> FTA 관련 대표적인 연구 논문 유형

연구 분야	
각 산업분야별 영향	원산지규정
FTA 추진 전략	무역·경제 효과 및 성과
법적·제도적 관점	기타

우선 여기서는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각 산업분야별 영향에 관한 연구, 원산지 관련 연구, FTA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FTA의 무역 및 경제효과 관련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각 산업분야별 영향에 관한 연구

특히 각 산업분야별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FTA 체결국과의 체결 전 주요 쟁점이 되었던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미 FTA의 경우 FTA 협상 시 쇠고기, 농업, 금융, 의약품 등이 주요 쟁점이었는데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표 2-10> 한-미 FTA 관련 산업분야별 영향에 관한 연구 사례

논문명	저자	연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의료용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용기	2013.2
한미FTA 의약품 관련 분야가 국내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고찰 : 미호주FTA사례비교를중심으로	박자희	2012.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임보광	2012.2
온라인교육시스템 활용이 사설학원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미FTA와사교육시장개방	이선경	2011.8
한미FTA협정이 한국 쇠고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양창현	2011.2
한미FTA가 한국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곽은지	2011.2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한국의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동준	2010.2
한미FTA의 협상이 중한FTA에 미치는 영향	전수매	2009.8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칠레, 한미FTA를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	이선자	2009.2
한미FTA가 밸브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양일호	2009.2
한미FTA 체결이 사료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허성준	2008.2
한미FTA 타결이 향후 의약품 지적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및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고혁진	2008.2
한미FTA의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박상욱	2008.2
한미FTA 협정이 곡물부문에 미치는 파급 영향	이상현	2007.8
한미FTA의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 금융서비스와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김태균	2007.8
한미FTA 체결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은행을 중심으로	김석원	2007.8
한미FTA와 한국의 금융산업 : 영향 및 대책	이지아	2007.8
한미FTA가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신승만	2007.2

(2) 원산지 관련 연구

원산지와 관련한 연구는 FTA 영향이나 FTA 전략에 비해서는 연구 논문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가 발췌한 961개 논문 중 71건만이 FTA를 키워드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중 6건만이 한미 FTA의 원산지규정 또는 증명에 관한 연구를 했을 뿐이다. 이는 아직 한미 FTA가 체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FTA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FTA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국, 일본, 미국과의 FTA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가 많은데 이 중에서도 한중 FTA 전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는 산업분야별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산업분야별 FTA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연희(2007.2)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미 FTA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¹⁹⁾ 첫째, FTA는 기본적으로 WTO가 추구하고자 하는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보다는 한 단계 낮은 전략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다자주의와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도 역시 다자주의와 조화되는 정책과 전략을 견지해야 한다. 향후 개방의 폭과 관세자유화 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WTO 농업협상의 방향 및 정도, 한국 쌀 관세화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민감 부분의 예외 또는 양허 유예기간을 결정해야 하고 제조업에서도 WTO의 공산품 시장접근을 충분히 감안하여 관세 인하속도가 늦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협상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19) 조연희(2007.2), 「한·미 FTA 추진전략과 무역구제분야에 대한 대응방안」,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84-87

견지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협상전략과 전술의 유연성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쟁점 사안별로 양보할 수 있는 최저선을 설정하고, 타협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한 부속서에 유보조항의 삽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분야와 같이 수용 시 악영향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규모가 매우 클 것이 확실하거나 그에 대한 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가급적 부속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보조항의 삽입을 통해 대처해야 할 것이며, 쌀 시장 개방과 같이 이해관계자 설득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UR의 쌀 시장 개방 유예 재협상 결과를 미국측에서 인정하도록 설득하고 점진적 개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문제와 같은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한 분야는 한-싱가포르와 한-EFTA 체결시의 사례를 활용하여 미국의 양보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미 FTA 이후 멕시코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질 강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멕시코의 경우 내부 개혁이 실패하여 NAFTA 가입효과가 조기에 소멸하였는데 정부조도의 성급한 개혁으로 수출 중심의 외형성장에 불구하고 성장기반 강화에 실패한 케이스임을 인지하여 우리는 사전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방효과를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를 통해 좀 더 폭넓은 개방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구축해야하며, 발효 후에도 양국간 상호협의를 채널을 계속 가동하여 세부사안에 대한 조율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FTA의 무역·경제 효과 및 성과 관련 연구

FTA의 무역 및 경제효과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무역규모, 무역구조, 무역구제제도와 관련한 연구와 FTA의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남기찬 등(2013)²⁰⁾의 수행 연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부산항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전체 패널자료와 FTA 체결 시점인 2004년 전후로 분리된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전체 패널자료 대상 분석의 경우 FTA 더미변수를 적용하여 FTA 체결 여부가 부산항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코자 하였으며 FTA 더미변수를 제외한 연도별, 품목별 관세율 변수를 포함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FTA 변수를 더미변수 형태로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GDP 변수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물동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임 및 FTA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관점과 불일치하게 나타났다.

특히 한미 FTA 성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표 2-11>과 같이 3개의 논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교육시스템 활용이 사설 학원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의료분야의 대응행동과 성과에 관한 연구, 투자분쟁 해결제도 연구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상품유형에 대한 연구와는 그 차이가 있다.

<표 2-11> 한-미 FTA 성과에 관한 연구 논문

논문명	저자	연도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활용이 사설 학원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한미 FTA와 사교육 시장 개방	이선경	2011.8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의료분야의 대응행동과 성과에 관한 연구	최강수	2013.2
한-미 FTA 투자분쟁 해결제도 연구 : 당사자 적격성과 제소대상성 중심으로	양진희	2014.8

20) 남기찬, 남형식, 강달원(201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부산항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 대 칠레 수입 컨테이너화물 중심 -」, 한국항만학회지 제37권 제6호, p.685

논문 이외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한미 FTA의 실질적인 성과와 관련한 연구가 일부 있었다. 특히 김영귀 외(2014)가 수행한 연구는 한미 FTA 발효 후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분야의 성과를 분석하고 국내 이행상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수출입 규모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의 대미 수출입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한미 FTA의 수출입효과 추정 및 요인별 분해방법을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종속변수로, 실질실요환율, 관세율, 한미 FTA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기반하여 한국의 대미 총 수출입 변화를 한미 FTA 등 요인별로 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2-12> 한-미 FTA 성과에 관한 인터넷자료 외

자료명/저자사항		발행기관	연도
멀티미디어자료	한미FTA 1년 성과와 과제[비디오녹화자료]/KBSMedia	KBS Media	2013
인터넷자료	한·미FTA 2년의 이행현황과 성과 [전자자료]/김영귀, 이효영, 강준구, 김혁황[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한·미FTA 발효1년간 주요성과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제201호 (2013년 3월)	한국조세연구원	2013
	한·미FTA 협정 발효 후 2년간 성과와 시사점 [전자자료]/김기홍, 전은경, 홍정아[저]	국회입법조사처	2014
	한미FTA 발효1주년, 對美 수출 성과분석 /작성자:고일훈,임수주,장선영,김태균,권오승,최명례,전미성,안중익,이명희	KOTRA	2013
	한미FTA 발효2년 對美수출성과 분석 [전자자료] /작성자:이정선,김현범,이병탁	KOTRA	2014
	한미FTA, 이제 시작이다 [전자자료] :한미FTA 발효 후 2년의 성과와 향후 對美 수출 유망 품목/제현정, 명진호, 김미경, 정혜선[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

이정선 외(2014)²¹⁾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부로 발효되었으나 통계 분석상 편의를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FTA가 발효된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입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대상은 HS 8단위 기준으로 2013년 미국의 대한 수입액이 1만 달러 이상인 품목을 품목별로 미국의 대 중국, 일본, 대만 수입액과 비교를 통해 한미 FTA 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대상 품목별로 관세가 인하된 제품을 FTA 수혜품목, FTA 발효 이전부터 관세가 없거나 일정기간 유예된 품목을 비수혜품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시사점

선행연구 검토 결과 FTA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FTA의 경제 전반적인 영향 또는 제조업·서비스업 등 각 산업별 주요 경제 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FTA 협상 시 쟁점이 되었던 쇠고기, 농업, 금융, 의약품 등에 대한 연구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비교적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한미 FTA 성과와 관련해서는 김영귀 외와 이정선 외의 연구에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연구에서 HSK 8단위, 2013년 미국의 대한 수입액이 1만 달러 이상인 품목을 품목별로 미국의 대 중국, 일본, 대만 수입액과 비교를 통해 한미 FTA 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분야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FTA 체결 이후 양국이 맺은 특혜관세 양허유형에 따른 당사국간 품목별 교역(및 물동량)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FTA가 무역-물류에 미친 효과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FTA 체결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해당 FTA에 의한 거시경

21) 이정선, 김현범, 이병탁(2014), 「한미FTA 발효2년 對美수출성과 분석」, KOTRA

제적 파급효과를 전체 총량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본 연구는 상품양허 유형 및 특혜 관세율 적용의 최소 단위인 HSK 10단위 차원에서 FTA의 관세 양허유형에 따른 품목별 교역량 변화에 대해 FTA 전후의 실제 변화를 분석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금번 연구에서는 FTA의 관세 양허유형에 따른 실질적인 품목별 교역량(교역액 및 교역규모) 변화 분석을 통해 FTA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미 FTA 협정문의 대한민국 양허표조문은 HSK 10단위 기준으로 각 품목별 양허유형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된 품목별로 2011년과 2013년 대미 수입 품목의 교역량을 먼저 HSK 10단위 기준 품목의 관세 양허유형별 전체 교역량 변화를 분석하고, HSK 2단위 기준으로 세부 품목별 교역량 변화와 더불어 각 양허유형별 품목에 대해 실제적으로 교역량 변화를 분석해보는데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관련 수출입 공항-항만의 물동량 증감패턴을 분석·예측하거나 또는 향후 추진될 FTA 협상 전략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장 한-미 FTA 양허유형 특징 및 관세율 현황

제1절 한-미 FTA의 양허유형 특징

3.1.1 한-미 FTA 양허표 조문 현황

한-미 FTA 협정문의 대한민국 양허표 조문을 살펴보면 <표 3-1>과 같이 되어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상품 양허유형은 대한민국 양허표 기준 HSK 10단위²²⁾ 품목 기준으로 기준세율과 양허유형이 세분화되어 있다. 참고로 미국측 양허표는 미합중국 통합 상품명 및 부호체계(HTSUS)의 8단위 기준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22) 참고 : HSK 기본구조

HSK해석에관한통칙 (GRI)	품목분류표 전체에 대한 분류기준으로서 통칙1~통칙6으로 구성됨 - 법적구속력이 있음
주(Legal Note)	부, 류, 소호에 설정된 분류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각각 해당 부, 류, 소호에 대해 적용. - 류범위, 용어의 정의 및 경합물품 등을 규정 - HS협약 주와 국내 주(6개)가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음
부(Section; 대분류) 류(Chapter; 중분류) 절(Sub-chapter)	- 부(Section):제1부 ~ 제21부로 구성(부의 표제는 법적 구속력은 없음) - 류(Chapter):제1류 ~ 제97류로 구성(류의 표제는 법적 구속력은 없음) - 절(Sub-chapter): 특정 류에서 이해편의상 유사물품 군(群)으로 구분한 것 (절의 표제는 법적 구속력은 없음)
호(Heading; 소분류)	- 류(2단위)를 세분류한4단위 - 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이 있음
소호(sub-heading; 세분류)	- 호를 세분류한6단위(소호까지 국제공용) - 소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이 있음
품목번호	- 소호를세분류한10단위(우리나라만 사용) - 품목번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이 있음

<표 3-1> 한-미 FTA 협정문 대한민국 양허표 조문 일부(발췌)²³⁾

부속서 2-나
대한민국 양허표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101101000	말	8	D	
0101109000	기타	8	D	
0101901010	경주말	8	D	
0101901090	기타	8	D	
0101909000	기타	8	G	
0102101000	곶소	89.1	A	
0102102000	옥우	89.1	A	
0102109000	기타	89.1	A	
0102901000	곶소	40	M	
0102902000	옥우	40	H	
0102909000	기타	0	K	
0103100000	1. 종돈	18	A	
010391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의 것	18	G	
010392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의 것	18	G	
0104100000	면양	8	A	
0104201000	유용산양	8	G	
0104209000	기타	8	A	
0105111000	(1) 종계	9	A	
0105119000	(2) 기타	9	A	
0105120000	나, 칠면조	9	A	
0105191000	오리	18	G	
0105199000	기타	9	A	
0105921000	(1) 종계	9	A	
0105929000	(2) 기타	9	A	
0105931000	(1) 종계	9	A	
0105939000	(2) 기타	9	A	
0105991000	오리	18	G	
0105992000	칠면조	9	A	
0105999000	기타	9	A	

한-미 FTA 협정문 내 대한민국 양허표에는 HSK 10단위 기준 품목별로 <표 3-1>과 같이 A, B, C, D... 코드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우

23) 관세청 : <http://www.customs.go.kr/>

선 한-미 FTA 관세양허표의 양허유형에 따른 품목별 교역량 변화를 분석코자 함으로 ‘협정문 부속서의 주해 조문’을 참고하여 각 코드의 양허유형을 전부 즉시철폐, 2년균등철폐, 3년균등철폐, 5년균등철폐로 변환하였다.

<표 3-2> 한-미 FTA 협정문 대한민국 양허표 조문 일부(예시)

HSK	품목명	기준세율	유형	양허 카테고리	긴급수입 제한조치
0101101000	말	8	D	5년균등철폐	
0101109000	기타	8	D	5년균등철폐	
0101901010	경주말	8	D	5년균등철폐	
0101901090	기타	8	D	5년균등철폐	
0101909000	기타	8	G	10년균등철폐	
0102101000	젓소	89.1	A	즉시철폐	
0102102000	육우	89.1	A	즉시철폐	
0102109000	기타	89.1	A	즉시철폐	
0102901000	젓소	40	M	12년균등철폐	
0102902000	육우	40	H	15년균등철폐	
0102909000	기타	0	K	무관세지속	
0103100000	1 종돈	18	A	즉시철폐	
0103910000	총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의 것	18	G	10년균등철폐	
0103920000	총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의 것	18	G	10년균등철폐	
0104100000	면양	8	A	즉시철폐	
⋮	⋮	⋮	⋮	⋮	⋮
9613800000	기타의 라이터	8	A	즉시철폐	
9613901000	압전식 점화 유니트	8	A	즉시철폐	
9613909000	기타	8	A	즉시철폐	
9614200000	파이프와 파이프 보울	8	A	즉시철폐	
9614900000	기타	8	A	즉시철폐	
9615909000	기타	8	A	즉시철폐	
9616200000	화장용 분첩과 패드	8	A	즉시철폐	
9617001000	보온병	8	A	즉시철폐	
9618001000	마네킹 인형	8	A	즉시철폐	
9618002000	자동 인형	8	A	즉시철폐	
9618009000	기타	8	A	즉시철폐	
9701101000	가. 회화	0	K	무관세지속	
9701102000	나. 덧상	0	K	무관세지속	
9701103000	다. 파스텔	0	K	무관세지속	
9701900000	2. 기타	0	K	무관세지속	
9702000000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0	K	무관세지속	

<자료 : 한-미 FTA 상품양허안 조문(대한민국 양허표 조문), 저자 가공 정리>

3.1.2 한-미 FTA 양허유형 구성 및 품목 수 현황

우선 FTA 체결의 궁극적 목표는 관세철폐이나 FTA 협정 체결 시 당사국 간 산업 품목별 비교우위를 반영하여 관세철폐 기간을 달리한다. 기본적으로 양국간의 산업에 상대적 영향을 덜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 즉시철폐 유형 및 단기철폐 유형에 포함시키고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장기철폐 유형에 포함시킨다.

한-미 FTA는 FTA 당사국으로 하여금 체약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 원칙²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⁵⁾ 한-미 FTA의 상품협정의 주요한 특징은 양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의 규정 이외에 일방 당사국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통하여 시장자유화의 폭을 최대화하였다는 점이다.

양국이 시장 개방에 어려움이 있는 민감 품목에 대해서 개별 체약국에만 별도로 적용하는 양허유형을 두어 시장개방의 속도를 더 세밀하게 조절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한-미 FTA는 FTA 당사국들로 하여금 부속서 2-나의 관세철폐 스케줄에 따라서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품목을 대한민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K’)의 10단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관세철폐 유형에 따라 철폐한다. 미국은 미합중국 통합 상품명 및 부호체계(HTSUS)의 8단위 기준으로 수입품을 세분화하여 관세철폐 유형에 따라 관세를 철폐한다. 양 당사국은 11가지의 공동 관세철폐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각각 개별적으로 상대국 수입품에 적용되는 개별 양허유형도 두고 있다.

24) 내국민대우원칙 : 지방정부가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체약 상대국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5) 김종범(2009), 「한-미 FTA 상품협정의 양허균형에 대한 고찰」, 통상법률, 통권 제85호, pp.39~48

<표 3-3> 한-미 FTA 협정문 대한민국 기준 공동·개별 양허유형 현황

양허유형	유형	공동 양허유형	개별 양허유형
즉시철폐	A	공동	
2년균등철폐	B	공동	
3년균등철폐	C	공동	
5년균등철폐	D	공동	
6년균등철폐	E	공동	
7년균등철폐	F	공동	
10년균등철폐	G	공동	
15년균등철폐	H	공동	
10년(비선형철폐)	I	공동	
12년(비선형철폐)	J	공동	
무관세지속	K	공동	
9년균등철폐	L		개별
12년균등철폐	M		개별
16년(비선형철폐)	N		개별
18년균등철폐	O		개별
20년균등철폐	P		개별
2014철폐	Q		개별
계절관세	U		개별
양허제외	Y		개별
10년(TRQ)	대한민국 부속서 참조		개별
12년(TRQ)	대한민국 부속서 참조		개별
15년(TRQ)	대한민국 부속서 참조		개별
18년(TRQ)	대한민국 부속서 참조		개별
5년이후 복리증가(TRQ)	대한민국 부속서 참조		개별
합계		11개	13개

<표 3-3>의 한-미간 FTA 협정문의 대한민국 관세양허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미 수입품목의 양허유형은 총 24가지 유형이 있다.

이 24가지 유형은 즉시철폐, 2년균등철폐, 3년균등철폐, 5년균등철폐, 6년균등철폐, 7년균등철폐, 9년균등철폐, 10년균등철폐, 12년균등철폐, 15년균등철폐, 18년균등철폐, 20년균등철폐, 10년(비선형철폐), 12년(비선형철폐), 16년(비선형철폐), 5년이후 복리증가(TRQ), 10년, 12년, 15년, 18년(TRQ), 무관세지속, 2014철폐, 계절관세, 양허제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 FTA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의 HSK 10단위 기준 한-미 간 관세 양허

품목 수는 전체 11,279개 품목이 된다. 이중 즉시철폐가 7,572개로 가장 많은 67.13%를 차지하고, 두번째가 1,498개 품목으로 13.28%를 차지하는 무관세지속 유형이다. 이어서 3년균등철폐, 10년균등철폐, 5년균등철폐 순으로 각각 6.75%, 5.63%, 4.51%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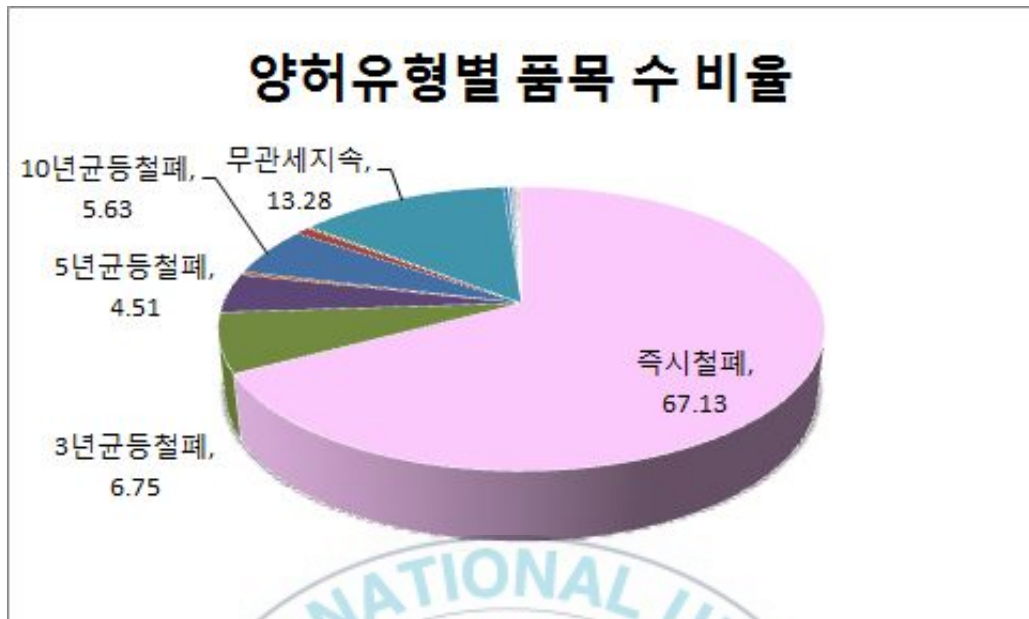
<표 3-4> 한-미 FTA 협정문 대한민국 기준 양허유형별 품목 수 현황

(단위: 개, %)

양허유형	유형	품목 수	비율
즉시철폐	A	7,572	67.13
2년균등철폐	B	6	0.05
3년균등철폐	C	761	6.75
5년균등철폐	D	509	4.51
6년균등철폐	E	2	0.02
7년균등철폐	F	41	0.36
9년균등철폐	L	1	0.01
10년균등철폐	G	635	5.63
12년균등철폐	M	34	0.3
15년균등철폐	H	100	0.89
18년균등철폐	O	3	0.03
20년균등철폐	P	2	0.02
10년(비선형철폐)	I	23	0.2
12년(비선형철폐)	J	1	0.01
16년(비선형철폐)	N	2	0.02
5년이후 복리증가(TRQ)	대한민국 부속서 2-나 참조	15	0.13
10년(TRQ)	대한민국 부속서 2-나 참조	11	0.1
12년(TRQ)	대한민국 부속서 2-나 참조	8	0.07
15년(TRQ)	대한민국 부속서 2-나 참조	12	0.11
18년(TRQ)	대한민국 부속서 2-나 참조	4	0.04
무관세지속	K	1,498	13.28
2014철폐	Q	21	0.19
계절관세	U	2	0.02
양허제외	Y	16	0.14
합계		11,279	100

<자료 : 한-미 FTA 협정문 - 대한민국 관세양허표>

<그림 3-1> 양허유형별 품목 수 비율



위 <표 3-4>에서 TRQ는 Tariff-Rate Quotas의 약자로 품목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수량까지는 무관세, 초과물량은 협정에 정해진 양허유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이다.

비선형철폐는 몇년동안 균등하게 철폐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현행관세를 유지하다가 나머지 기간동안 균등하게 철폐하는 것을 말하며 계절관세는 감자, 오렌지, 포도에 대해 계절관세 적용기간에 입항하는 품목에 적용하는 양허유형을 말한다.

참고로 외교통상부(2011)에 의하면 한-미 상품양허 결과표에 품목 수를 11,261개로 표시하고 있어 <표 3-4>의 품목 수와 18개 차이가 있으나 그 비율이 전체 품목대비 0.1% 이하임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부속서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에 있는 11,279개 품목을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제2절 한-미 FTA의 양허유형별 관세율 및 대표 품목 현황

제2절에서는 한-미 FTA 대한민국 관세양허표 기준으로 양허유형별 관세율 현황과 양허유형별 대표 품목을 살펴보았다.

3.2.1 양허유형별 관세율 현황

우선 양허유형별 관세율 현황을 살펴 보면 양허유형별 최저세율과 최고세율 및 평균관세율은 <표 3-5>와 같다.

<표 3-5> 양허유형별 관세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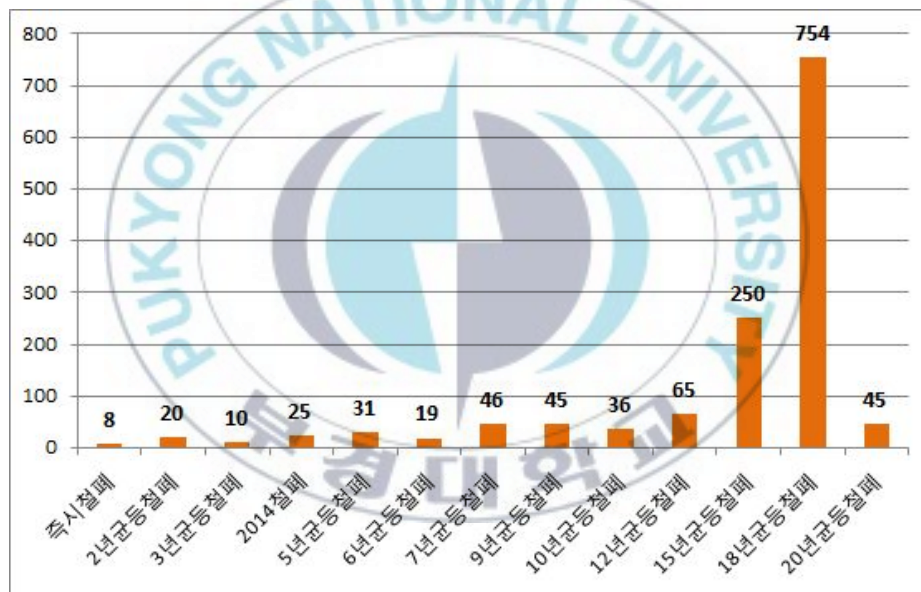
(단위 : %)

양허유형	개수	최저세율	최고세율	평균관세율
즉시철폐	7,572	1	487	8
2년균등철폐	6	8	30	20
3년균등철폐	761	1	45	10
2014철폐	21	18	30	25
5년균등철폐	509	2	887.4	31
6년균등철폐	2	8	30	19
7년균등철폐	41	8	630	46
9년균등철폐	1	45	45	45
10년균등철폐	635	2	887.4	36
12년균등철폐	34	18	611.5	65
15년균등철폐	100	10	800.3	250
18년균등철폐	3	754	754.3	754
20년균등철폐	2	45	45	45
10년비선형철폐	23	8	36	15
12년비선형철폐	1	10	10	10
16년비선형철폐	2	50	50	50
5년이후복리증가(TRQ)	15	50	487	172
10년TRQ)	11	36	89	55
12년TRQ)	8	10	385.7	131
15년TRQ)	12	30	513	162
18년TRQ)	4	223	222.8	223
계절관세	2	45	304	175
무관세지속	1,498	0	0	0
양허제외	16	-	-	-
합계	11,279			102.0

무관세지속 유형은 기준관세율이 0%이다. 양허제외 유형은 표시된 기준세율이 없다. 즉시철폐의 경우는 최저 세율은 1%이고 최고세율은 487%이다. 즉시철폐 7,572개 품목 중 기준세율이 54%를 초과하는 품목은 7개 품목 뿐이다. 뿐만 아니라 세율이 20% 이하인 품목이 7,490개 품목으로 약 99%를 차지한다. 따라서 평균관세율은 8%를 나타낸다. 이는 전체 24개 양허유형 중 평균관세율이 가장 낮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이 한미 FTA 협정 시 즉시철폐 대상에 해당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 양허유형별 평균관세율

(단위 : %)



<그림 3-2>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관세철폐기간이 짧은 양허유형의 경우 평균관세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시철폐부터 5년균등철폐까지 단기철폐²⁶⁾ 유형은 최대 31%의 평균관세율을 보이고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철폐

26) 단기철폐 유형 : 즉시철폐, 2년, 3년, 5년, 균등철폐 유형

중기철폐 유형 : 6년균등철폐 이상~10년균등철폐 미만

장기철폐 유형 : 10년균등철폐 이상

※ 장~단기 예외 유형 : 비선형철폐, TRQ철폐, 계절관세 등

유형의 경우 보다 높은 관세율을 나타내는데 15년균등철폐와 18년균등철폐 유형의 경우에는 각 250%와 754%를 기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준세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수입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일 것이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품목이 관세율 우선 철폐 대상이 되었을 것이며 기준세율이 높은 품목의 경우 장기철폐 유형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20년균등철폐 유형의 경우 장기철폐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이 45%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과(0808100000)와 배(0808201000)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우리측 민감 농산물에 대해 장기철폐를 하였기 때문이다.

3.2.2 양허유형별 대표 품목 현황

우리측 양허유형별 품목을 <표 3-6>에서 살펴보면 자동차부품, 항공가전, 전자계측기 등의 경우 기준세율이 10% 미만이며 전부 즉시철폐 품목이다.

사료용 곡물과 채유는 각각 328%와 487%임에도 불구하고 즉시철폐 품목에 포함된 것은 특이할 만하다.

딸기, 사과, 배 등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과일에 대해서는 9년~20년균등철폐로 비교적 장기철폐를 추진했다. 그러나 레몬, 아보카도, 프룬 등 딸기, 사과, 배에 비해 수요가 적은 과일은 2년균등철폐가 되었다.

인삼류의 경우 수삼, 미삼, 잡삼을 포함하여 모두 18년균등철폐 또는 18년균등철폐(TRQ)로 되어있다. 찹쌀, 쌀가루의것, 벼, 쌀로만든 것 등의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농산물의 경우 기준세율이 산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허 제외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쌀시장 개방의 경우 국민적 반대 여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측 민감 수산물인 민어, 명태의 경우 각각 12년, 15년의 장기철폐 기간을 확보하였음을 보인다.

<표 3-6> 우리측 양허유형별 품목 현황

(): 관세율

양허유형	개수	품목
즉시철폐	7,572	자동차부품(3~8),크실렌(5), 통신용광케이블(8),항공가전(3), 에어백(8), 전자계측기(8), 백미러(8),디지털프로젝션TV(8),곡물-사료용(328),채유(487)
2년균등철폐	6	레몬(30),아보카도(30),프룬(18),해바라기씨(25),콜라베이스(8)
3년균등철폐	761	요소(6.5), 실리콘오일(6.5),폴리우레탄(6.5), 치약(8), 향수(8), 골프채(8)등
5년균등철폐	509	승용차(8), 고주파증폭기(8), 알루미늄판(8), 안전면도날(8), 환자감시장치(8), 면도기(8),조제세제(6.5), 헤어린스(8), 바다가재(20),채소-신선한것(887.4),귀리(554.8)
6년균등철폐	2	(과일)탈각한것(30),(동식물성유지)기타(8)
7년균등철폐	41	토마토(45),팍콘(45),무화과(30),살구(45),사과(45),팍콘(630)
9년균등철폐	1	초분류딸기(45)
10년균등철폐	635	기초화장품(8), 페놀(5.5), 초음파영상진단기(8), 볼베어링(13), 콘택트렌즈(8)등
12년균등철폐	34	젖소(40),양파(27),송이버섯(27),조제분유(36),참기름/들기름(36),대추(611.5)
15년균등철폐	100	육과/식용설육(40),마늘(360%),고추(270),울무의것/기타곡물(800.3)
18년균등철폐	3	인삼류(754.3)
20년균등철폐	2	사과(45),배(45)
10년(비선형철폐)	23	아귀(10, 냉동), 가오리(10, 냉동), 볼락(10, 냉동), 오징어(24,냉동), 콩치(36, 냉동), 꽃게(20-산것, 신선.냉장, 냉동), 파티클보드(8),섬유판(8), 합판(12)등
12년(비선형철폐)	1	고등어(10)
16년(비선형철폐)	2	당류,설탕과자(50)
5년이후복리증가(TRQ)	15	전지분유(176),가당연유(89),오렌지(50),천연꿀(243),인삼기타(487)
10년(TRQ)	11	유장분말(49.5),버터(89)
12년(TRQ)	8	민어(63),조제사료(50.6),스웰링전분(385.7)
15년(TRQ)	12	명태(30),가공치즈,기타치즈(36),쌀보리(299.7),겉보리(324)
18년(TRQ)	4	수삼,미삼,잡삼(222.8)
2014철폐	21	삼겹살(25),육어류조제품(27~30)
계절관세	2	포도-신선한것(45),감자(304)
무관세지속	1,498	종자,유기화합물,의료용품,펄프,지와판지,철강제품,동과그제품,보일러기계류
양허제외	16	참쌀,쌀가루의것,벼,쌀로만든것등
합계	11,279	

<자료 : 한-미 FTA 상품양허안 조문(대한민국 양허표 조문), 저자 가공 정리>

제4장 한-미 FTA 양허유형별 교역량 변화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4.1.1 분석대상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발효 시점이 2012년 3월 15일이므로 계절적 편차를 최소화하고 관세율 변화의 일관된 시점을 적용하기 위해 FTA 적용 직전 연도인 2011년과 적용 직후 연도인 2013년의 대미 품목별 수입 교역량을 비교 분석하기로 했다.

물론 각 품목들은 외부 환경변화나 기타 다른 국가와의 관세율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여 증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외부 변화를 제외한 순수 양허유형 및 관세율 변화에 따른 물동량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1) 대미 수입 품목별 교역량

한-미간 물동량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미간 연도별 품목별 물동량이 중량과 금액기준으로 필요하여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으로부터 HSK 10단위 기준으로 대미 품목별 수입자료를 중량별 금액별 자료를 입수하였다.

이렇게 구한 자료를 가지고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상품양허안과 2011년, 2013년 대미 수입 품목별 교역량 자료를 코드별로 매칭시키는 작업을 거쳤다. <표 4-1>는 2011년과 2013년 한-미 간 HSK 2002 기준 수입 품목별 중량 현황자료이다.

<표 4-1> 2011년, 2013년 한-미 간 수입 품목별 중량 현황

HS_CD	품목명(HSK2002 기준)	2013 수입중량(kg)	2011 수입중량(kg)
0103100000	1 종돈	92,149	314,619
0105111000	(1) 종계	11,281	35,845
0105119000	(2) 기타	3,724	12,596
0106191000	개	4,526	5,545
0106199000	기타	4,543	4,129
0106201000	뱀	265	269
0106203000	거북	1,070	1,399
0106209000	기타	586	399
0106320000	앵무류(파로트류, 파라키트류, 금강앵무류, 유황앵무류 를 포함한다)	146	35
0106390000	기타	40	29
0106901000	양서류	160	194
0106903090	기타	66	-
0106909000	기타	24	141
0201300000	뼈없는 것	7,575,281	8,542,412
0202300000	뼈없는 것	35,264,295	50,332,455
0203191000	삼겹살	3,790,559	5,256,749
0203199000	기타	2,307,848	5,287,339
02032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19,554	10
0203291000	삼겹살	1,600,123	1,632,484
0203299000	기타	93,268,684	137,934,659
0206100000	소의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966,032	651,086
0206291000	고리	33,475	365,372
0206292000	조	1,222,202	2,944,413
0206299000	기타	7,046,527	9,150,321
0206300000	돼지의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196,160	223,846
0206499000	기타	5,714,182	9,185,624
0207141010	다리	44,969,089	85,628,667
0207141020	가슴	166,897	398,155
0207141090	기타	68	56,776
0207250000	절단하지 않은 육, 냉동한 것	19,069	5,793
0207271000	절단육	878,621	1,450,222
0207272090	기타	393	10,452
0210120000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1,216,729	1,070,994
0210190000	기타	870	39
0301921000	실장어	3,082	86
0301929000	기타의 것	14,384	12,098
0301997000	먹장어	1,299,850	907,707
0302210000	넙 치	93	1
0303110000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앙코링쿠스 넬카)	19,347	32,916
0303190000	기타	9	38,790
⋮	⋮	⋮	⋮

<표 4-2> 연도별 한-미간 수입·수출 품목수(HSK 10단위 기준)

연도	수입 품목 수	수출 품목 수
2010년	8,031	5,535
2011년	8,180	5,544
2012년	8,425	5,777
2013년	8,543	5,906
2014년	8,091	5,384
합계	41,270	28,146

<자료 :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자료, 저자 가공 정리>

연도별 한-미간 수입·수출 품목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2013년은 수입 품목 수가 8,543개로 8,180개의 품목을 교역한 2011년보다 거래 품목이 363개 더 많다. 이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대미 수입 품목이 늘어난 무역창출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표 4-3>을 보면 2013년 수입거래가 발생한 품목 8,543개 중 53.96%인 4,610개가 즉시철폐 품목이다.

여기서 #N/A로 표시되는 품목은 1,763개로 2013년 기준 전체 품목의 20.64%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미 FTA는 HSK 2002 기준으로 상품양허안이 작성되어 매 5년마다 바뀐 HSK2007, HSK2012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허유형을 알 수 없는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1/5임에도 불구하고 추적하기 어려워 양허유형에 따른 품목별 교역량 변화를 분석하는 데는 일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표 4-3> 2013년 기준 양허유형별 수입거래 품목수 및 비율

양허유형	유형	품목수	비율
즉시철폐	A	4,610	53.96
2년균등철폐	B	5	0.06
3년균등철폐	C	491	5.75
5년균등철폐	D	345	4.04
6년균등철폐	E	1	0.01
7년균등철폐	F	32	0.37
10년균등철폐	G	277	3.24
15년균등철폐	H	48	0.56
10년(비선형철폐)	I	5	0.06
12년(비선형철폐)	J	-	0.00
무관세지속	K	894	10.46
9년균등철폐	L	-	0.00
12년균등철폐	M	17	0.20
16년(비선형철폐)	N	2	0.02
18년균등철폐	O	-	0.00
20년균등철폐	P	-	0.00
2014철폐	Q	15	0.18
계절관세	U	1	0.01
양허제외	Y	12	0.14
5년이후 복리증가(TRQ)	대한민국 부속서 참조	11	0.13
18년(TRQ)	대한민국 부속서 참조	1	0.01
15년(TRQ)	대한민국 부속서 참조	4	0.05
12년(TRQ)	대한민국 부속서 참조	5	0.06
10년(TRQ)	대한민국 부속서 참조	4	0.05
#N/A ²⁷⁾		1,763	20.64
	합계	8,543	100.00

27) #N/A : 한_미 FTA는 HSK2002 기준으로 상품양허안이 작성되어 HSK2007, HSK2012 반영 등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으나 상품양허안은 신규로 작성되지 않아 양허율 추적(파악)이 어려운 품목이 #N/A로 표시됨(다만, FTA 포털-FTA 자료실에 “HS 2012와 HS 2002의 연계표(HS2012→HS2002)”가 있으나 이는 HSK 6단위(1,795개 품목)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10단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므로 각 코드를 연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 대미 수출입 현황 및 무역 수지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을 기준으로 최근 6년간 대 미국 수출입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우선 한-미 FTA 체결 전후 대미 수출입 현황 및 무역 수지를 살펴보면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2013년의 경우 수출은 6% 증가했으며 수입은 4.2%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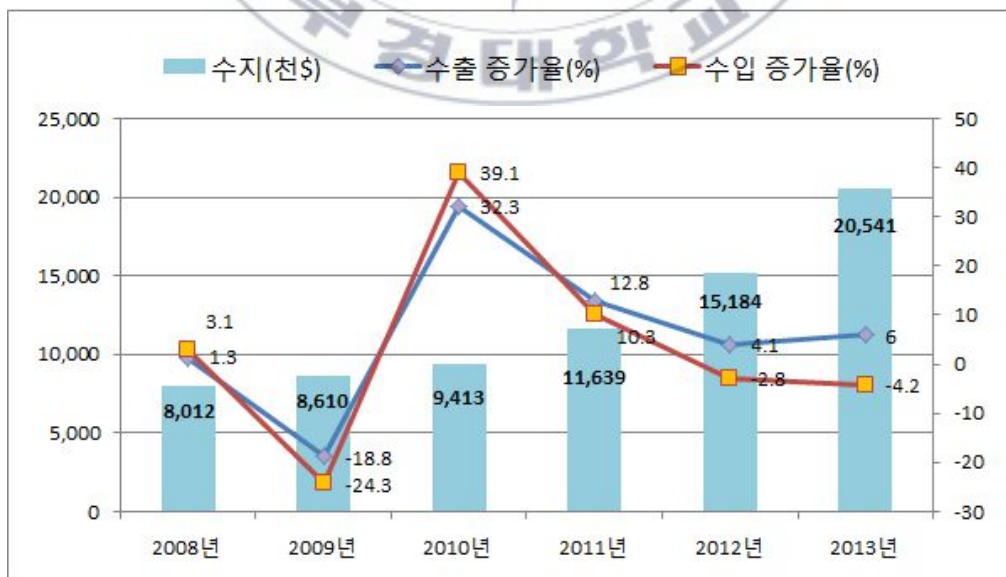
<표 4-4> 대미 수출입 현황 및 무역 수지

(단위 : 천불, %)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3년	62,052,488	6.0	41,511,916	△4.2	20,540,572
2012년	58,524,559	4.1	43,340,962	△2.8	15,183,597
2011년	56,207,703	12.8	44,569,029	10.3	11,638,674
2010년	49,816,058	32.3	40,402,691	39.1	9,413,367
2009년	37,649,854	△18.8	29,039,451	△24.3	8,610,403
2008년	46,376,610	1.3	38,364,783	3.1	8,011,827

<자료 : 한국무역협회>

<그림 3-3> 대미 수출입 현황 및 무역 수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저자 가공 정리>

2011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수출은 10.4% 증가했고 수입은 6.8% 감소했다. 2008~2013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한-미 FTA 체결 후 오히려 수입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에 우려하던 미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대미 무역수지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한-미 FTA가 발효된 지 2년 남짓밖에 되지 않아 한-미 FTA의 효과를 이 시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 대미 수출입 현황 및 무역수지를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한-미 FTA 체결이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왔다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다.

우리나라와 대미 무역수지는 2008년부터 봤을 때 계속 흑자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 대폭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수입의 경우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다시 감소하고 있다.²⁸⁾

수출은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기준 621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2011년 446억 달러에서 감소추이를 보여 2013년 기준 415억 달러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이며 2013년에는 20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8) 김영귀 외, (2014), 「한-미 FTA 2년의 이행 현황과 성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1.2 분석대상 자료 선정

(1) 분석대상 품목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의 분석 비교 시점을 계절적 편차를 최소화하고 관세율 변화의 일관된 시점을 적용하기 위해 2011년과 2013년 각각 1년 동안 한국의 대미국 수입품목 중 2011년과 2013년 중 거래가 발생한 적이 있는 품목 전체의 교역량(수입액 및 물동량) 변화를 HSK 10단위 품목을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1년과 2013년에 수입이 발생한 품목 건수는 2011년 8,180개, 2013년이 8,543개이다.

2011년과 2013년에 수입 품목 중 각 연도별 교역이 각각 일어난 품목과 2011년에는 거래가 있었으나 2013년에는 거래가 없는 품목, 2013년에는 거래가 있었으나 2011년에는 거래가 없는 품목을 합치면 전체 9,498개의 품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도출한 9,498개 품목을 기준으로 양허유형 및 관세율 변화에 따른 교역량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양허유형별 분석대상 품목 현황

2011년과 2013년에 거래된 품목을 양허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4-5>와 같다. 2011년 2013년 기준 양허유형별 품목수 및 비율을 살펴보면, 즉시철폐는 5,111개로 전체 품목 중 53.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관세지속이 959개로 10.1%를 차지한다.

3년균등철폐 품목은 539개로 5.67%, 5년균등철폐 품목이 네 번째로 많은 385개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9년·18년·20년균등철폐의 경우 대한민국 양허표에는 있으나 2011년과 2013년에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표 4-5> 부속서 대한민국 양허표 기준 및 2011, 2013년 수입품목 기준 비교표

양허유형	양허표 기준		2011, 2013 수입품목 기준	
	품목수	비율(%)	품목수	품목비율(%)
즉시철폐	7,572	67.13	5,111	53.81
2년균등철폐	6	0.05	5	0.05
3년균등철폐	761	6.75	539	5.67
5년균등철폐	509	4.51	385	4.05
6년균등철폐	2	0.02	1	0.01
7년균등철폐	41	0.36	32	0.34
9년균등철폐	1	0.01	0	0
10년균등철폐	635	5.63	348	3.66
12년균등철폐	34	0.3	22	0.23
15년균등철폐	100	0.89	58	0.61
18년균등철폐	3	0.03	0	0
20년균등철폐	2	0.02	0	0
10년(비선형철폐)	23	0.2	14	0.15
12년(비선형철폐)	1	0.01	1	0.01
16년(비선형철폐)	2	0.02	2	0.02
5년이후복리증가(TRQ)	15	0.13	14	0.15
10년(TRQ)	11	0.1	4	0.04
12년(TRQ)	8	0.07	6	0.06
15년(TRQ)	12	0.11	7	0.07
18년(TRQ)	4	0.04	2	0.02
2014철폐	21	0.19	18	0.19
계절관세	2	0.02	1	0.01
무관세지속	1,498	13.28	959	10.10
양허제외	16	0.14	14	0.15
#N/A(알 수 없음)	-	-	1,955	20.58
합계	11,279	100	9,498	100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의 대한민국 관세양허표 기준 품목과 앞에서 말한 2011년, 2013년 수입교역이 발생한 9,498개 품목 전체를 통해 유형별 품목 수 및 비율을 비교해 보면 즉시철폐의 경우 양허표를 기준으로 7,572개 품목으로 67.13%를 차지한다.

그러나 2011년과 201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5,111건으로 53.81%로 13.32%가 감소하였다. 전체 품목 수가 다르다 하더라도 즉시철폐가 13% 이상 감소함을 나타내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미 FTA가 HSK 2002 기준으로

관세양허표가 만들어져 양허유형을 알 수 없는 품목 1,955개 중 즉시철폐가 상당품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10년 균등철폐와 무관세지속 유형의 각각 약 2%와 3%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알 수 없는 품목에 일부 유형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최종 분석대상 품목 선정

앞의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2013년 기준 거래 품목별 양허유형을 살펴보면 HSK 2002 기준으로 봤을 때 양허유형을 알 수 없는 품목이 9,498개 품목 중 1,955개인 20.5%를 차지한다. 그 이유는 한-미 FTA는 HSK 2002 기준으로 양허표가 되어 있고 HSK는 매5년마다 크게 바뀌고 해마다 신규·소멸품목 등으로 인해 조금씩 바뀌며 2011년과 2013년 수입 교역품목은 2011년은 HSK 2007 기준, 2013년은 HSK 2012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당시 HSK 2012와 HSK 2002의 연계표를 제시하였으나 이 표는 HSK 6단위 기준으로 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HSK 10단위 기준으로 변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분석상의 어려움이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교역량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우선 데이터 분석에 제약이 있는 품목을 연구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기준별로 하나씩 제외시켜 나갔다.

<표 4-6> 분석 데이터 품목 제외 기준

1차	양허유형이 #N/A(알수없음)으로 표시되는 품목 제외	1,955개
2차	양허유형에서 TRQ 또는 비선형철폐 제외	50개
3차	적용세율 계산 안되는 품목 제외(세율이 % or 단위별 금액으로 적용 애로)	35개
합계		2,040개

먼저 HSK2002 기준으로 인해 양허유형이 나타나지 않는 품목 1,955개를 제외시켰다. 이러한 유형은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양허유형 및 기준세율을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양허유형에 TRQ 또는 비선형철폐 품목 50개를 제외시켰다. 이는 해당연도에 정확한 양허세율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관세율 계산이 어려운 양허세율이 ‘% 또는 단위별 금액으로 적용’되는 품목 35개를 제외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제외된 품목 2,040개를 뺀 나머지 7,458개 품목을 최종 분석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표 4-7> 양허유형별 제외품목 및 분석대상 비교

(단위 : %)

양허유형	전체품목		제외품목		분석대상	
	품목수	양허유형별 품목비율	품목수	양허유형별 품목비율	품목수	양허유형별 품목비율
즉시철폐	5,111	53.81	6	0.063	5,105	53.75
2년균등철폐	5	0.05	-	0	5	0.05
3년균등철폐	539	5.67	4	0.042	535	5.63
5년균등철폐	385	4.05	2	0.021	383	4.03
6년균등철폐	1	0.01	-	0	1	0.01
7년균등철폐	32	0.34	-	0	32	0.34
10년균등철폐	348	3.66	10	0.105	338	3.56
12년균등철폐	22	0.23	1	0.011	21	0.22
15년균등철폐	58	0.61	12	0.126	46	0.48
10년(비선형철폐)	14	0.15	14	0.147	-	0
12년(비선형철폐)	1	0.01	1	0.011	-	0
16년(비선형철폐)	2	0.02	2	0.021	-	0
5년이후 복리증가(TRQ)	14	0.15	14	0.147	-	0
10년(TRQ)	4	0.04	4	0.042	-	0
12년(TRQ)	6	0.06	6	0.063	-	0
15년(TRQ)	7	0.07	7	0.074	-	0
18년(TRQ)	2	0.02	2	0.021	-	0
2014철폐	18	0.19	-	0	18	0.19
무관세지속	959	10.1	-	0	959	10.1
양허제외	14	0.15	-	0	14	0.15
계절관세	1	0.01	-	0	1	0.01
#N/A(알 수 없음)	1,955	20.58	1,955	20.58	-	0
합계	9,498	100	2,040	21.4782	7,458	78.52

비선형철폐 유형과 TRQ를 포함하여 양허유형을 알 수 없는 품목을 제외한 분석대상은 <표 4-7>과 같다.

2011, 2013년 교역 품목 기준 22개 양허유형에서 분석상의 어려움이 있는 품목 2,040개 제외 후 남은 품목은 7,458개 품목이며 즉시철폐, 2년균등철폐, 3년균등철폐, 5년균등철폐, 6년균등철폐, 7년균등철폐, 10년균등철폐, 12년균등철폐, 15년균등철폐와 2014철폐, 계절관세, 양허제외, 무관세지속 등 1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제2절 양허유형별 교역량 추이 분석

제2절에서는 위에서 도출한 2011년과 2013년 대비 수입교역이 발생한 7,458개 품목에 대해 수입중량, 수입금액 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역량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4.2.1 관세 양허유형에 따른 교역량 변화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1년과 2013년 HSK 10단위 기준 품목의 양허유형별 실증 자료를 가지고 양허유형별 교역량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2011년과 2013년 수입중량을 양허유형별로 <표4-8>과 같이 정리하였다.

수입중량은 품목 수가 많은 즉시철폐가 2011년에는 74.8%, 2013년에는 62.19%를 차지하고 있다.

7년균등철폐의 경우 품목수는 32개인데 반해 2011년에 중량이 전체 수입 중량대비 4.48%를 차지함으로 단일품목의 중량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에 비해 2013년에는 전체 중량 비중이 0.57%로 약 3.9%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곡물 기타(HSK : 1005909000) 품목의 중량 비율이 4.38%에서 0.41%로 줄었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 4-8> 2011, 2013년 양허유형별 수입증량 및 비중

양허유형	품목수	양허유형별 품목비율	2013		2011		비중 차이
			수입증량(Kg)	비중(%)	수입증량(Kg)	비중(%)	
즉시철폐	5105	68.45	11,955,496,804	62.19	20,051,267,935	74.80	△12.61
2년균등철폐	5	0.07	15,589,787	0.08	8,218,286	0.03	0.05
3년균등철폐	535	7.17	398,430,227	2.07	470,951,519	1.76	0.32
5년균등철폐	383	5.14	194,972,727	1.01	196,783,087	0.73	0.28
6년균등철폐	1	0.01	9,774,584	0.05	9,032,971	0.03	0.02
7년균등철폐	32	0.43	108,765,306	0.57	1,201,963,145	4.48	△3.92
10년균등철폐	338	4.53	544,259,988	2.83	834,561,260	3.11	△0.28
12년균등철폐	21	0.28	8,636,629	0.04	10,487,868	0.04	0.01
15년균등철폐	46	0.62	56,151,783	0.29	75,710,682	0.28	0.01
2014철폐	18	0.24	104,827,586	0.55	151,162,264	0.56	△0.02
무관세지속	959	12.86	1,503,612,716	7.82	1,551,278,661	5.79	2.03
양허제외	14	0.19	213,190,157	1.11	167,063,268	0.62	0.49
계절관세	1	0.01	7,579,181	0.04	5,769,549	0.02	0.02
합계	7,458	100	15,121,287,475	78.66	24,734,250,495	92.27	△13.61

<표 4-9> 2011, 2013년 양허유형별 수입금액 및 비중

(단위 : \$, %)

양허유형	품목수	양허유형별 품목비율	2013년		2011년		비중 차이
			수입금액	비중	수입금액	비중	
즉시철폐	5,105	68.45	13,309,610,078	32.43	16,908,063,366	38.40	△5.97
2년균등철폐	5	0.07	32,525,826	0.08	15,334,646	0.03	0.04
3년균등철폐	535	7.17	5,363,597,682	13.07	5,112,655,930	11.61	1.46
5년균등철폐	383	5.14	1,262,875,604	3.08	1,094,289,036	2.49	0.59
6년균등철폐	1	0.01	103,488,017	0.25	79,996,016	0.18	0.07
7년균등철폐	32	0.43	87,898,874	0.21	445,097,860	1.01	△0.80
10년균등철폐	338	4.53	1,433,303,726	3.49	1,697,325,590	3.86	△0.36
12년균등철폐	21	0.28	29,732,066	0.07	28,572,523	0.06	0.01
15년균등철폐	46	0.62	330,353,782	0.80	397,612,675	0.90	△0.10
2014철폐	18	0.24	281,232,823	0.69	453,503,103	1.03	△0.34
무관세지속	959	12.86	6,756,361,506	16.46	6,855,588,950	15.57	0.89
양허제외	14	0.19	166,832,619	0.41	144,197,848	0.33	0.08
계절관세	1	0.01	20,081,744	0.05	14,485,355	0.03	0.02
합계	7,458	100	29,177,894,347	71.09	33,246,722,898	75.51	△4.42

양허유형별 수입금액을 정리한 <표 4-8>과 <표 4-9>를 보면 중량기준과 달리 2011년과 2013년이 각각 78.66%와 92.27%의 중량 비중을 차지하던 것이 수입액은 각각 71.09%, 75.51%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량보다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량이 크다 하여 금액이 큰 것은 결코 아니다. 금액과 물동량이 상반되게 나타나는 이유는 항공으로 수송되는 고가품의 수입가치가 금액기준에 포함됐기 때문일 수도 있고 비교적 값이 싼 대량 품목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²⁹⁾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양허유형별 교역량을 볼 때 교역규모(물동량)보다는 교역액(금액) 기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4-10> 품목 제외 후 양허유형별 중량 및 금액 증감 현황

(단위 : %)

양허유형	품목수	양허유형별 품목비율	수입중량 증감량(kg)	수입중량 증감비율	수입금액 증감액(\$)	수입금액 증감비율
즉시철폐	5,105	53.75	△8,095,771,131	△40.38	△3,598,453,288	△21.28
2년균등철폐	5	0.05	7,371,501	89.7	17,191,180	112.11
3년균등철폐	535	5.63	△72,521,292	△15.4	250,941,752	4.91
5년균등철폐	383	4.03	△1,810,360	△0.92	168,586,568	15.41
6년균등철폐	1	0.01	741,613	8.21	23,492,001	29.37
7년균등철폐	32	0.34	△1,093,197,839	△90.95	△357,198,986	△80.25
10년균등철폐	338	3.56	△290,301,272	△34.78	△264,021,864	△15.56
12년균등철폐	21	0.22	△1,851,239	△17.65	1,159,543	4.06
15년균등철폐	46	0.48	△19,558,899	△25.83	△67,258,893	△16.92
2014철폐	18	0.19	△46,334,678	△30.65	△172,270,280	△37.99
무관세지속	959	10.1	△47,665,945	△3.07	△99,227,444	△1.45
양허제외	14	0.15	46,126,889	27.61	22,634,771	15.7
계절관세	1	0.01	1,809,632	31.37	5,596,389	38.63
합계	7,458	78.52	△9,612,963,020	△38.86	△4,068,828,551	△12.24

29) 전찬영, 이수영, 정경선(2013), 전제서, p.88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허유형별 중량 및 금액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절관세 및 양허제외 유형을 제외한 품목 중 2년·3년·5년·6년 균등철폐의 경우 증가를 보인다. 일부 품목을 제외한 경우에서도 전체 품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년·3년·5년·6년균등철폐 유형에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2,040개 품목을 제외한 결과에서도 품목 제외 전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2년~6년균등철폐의 비교적 철폐 기간이 짧은 양허유형에서 교역액 증가를 보인 것이다.

즉시철폐와 2년균등철폐의 경우 2013년에는 관세가 완전 철폐되었으며, 3년균등철폐, 5년균등철폐, 6년균등철폐의 경우 각각 2/3, 2/5, 2/6의 관세인하효과를 누린 반면 10년균등철폐, 12년균등철폐, 15년균등철폐 유형은 2/10, 2/12, 2/15의 관세인하효과로 철폐기간이 짧은 유형에 비해 관세인하효과를 덜 받은 이유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2014년철폐 유형의 경우는 2013년에 관세인하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역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4.2.2 추가분석을 통한 양허유형별 교역량 변화 분석

앞서 2,040개 품목 제외 후 2011년과 2013년의 양허유형별 수입 교역액을 분석해 본 결과 단일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품목 대비 상대적으로 현저히 커서 교역량 변화에 단일품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각 양허유형별 전체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제외하고 분석해 보기로 했다.

먼저 즉시철폐 유형에서 단일 품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증감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품목을 살펴보면 아래 <표 4-11>과 같다. 이는 2011년 기준으로 4개의 품목이 즉시철폐 전체 수입액 38.4%를 100으로 봤을 때 차지하는 비중이 25%이며 이 중 사료용(1005901000)과 제분용(1001909030)의 경우 감소율이 98% 이상을 보인다.

<표 4-11> 즉시철폐 품목 중 추가제외 품목(교역액 비중 상위 4개 품목)

(단위 : %)

<2011년 2013년 교역액 현황>

HSK (10단위)	양허 유형	품목명 (HSK2002기준)	2013 수입금액(\$)	2013수입 금액비율 /전체수입액	2011 수입금액(\$)	2011수입 금액비율 /전체수입액
1005901000	즉시 철폐	사료용	25,395,205	0.06	1,539,837,023	3.50
7204490000		나. 기타	786,539,806	1.92	1,364,013,428	3.10
2701121000		강점결성 코크스용탄	398,154,580	0.97	918,796,731	2.09
1001909030		제분용	0	0	495,091,304	1.12
상위 4개 품목 합계			1,210,089,591	2.95	4,317,738,486	9.81
양허유형 전 품목 중 즉시철폐 비중			13,309,610,078	32.43	16,908,063,366	38.40

<2011년 2013년 교역액 증감 현황>

HSK (10단위)	양허 유형	품목명 (HSK2002기준)	수입증량 증감량	수입증량 증감비율	수입금액 증감액	수입금액 증감 비율
1005901000	즉시 철폐	(곡물)사료용	△4,738,616,842	△97.84	△1,514,441,818	△98.35
7204490000	즉시 철폐	나. 기타	△707,654,015	△25.70	△577,473,622	△42.34
2701121000	즉시 철폐	강점결성 코크스용탄	△1,067,859,222	△27.92	△520,642,151	△56.67
1001909030	즉시 철폐	제분용	△1,252,753,812	△100.00	△495,091,304	△100.00
합계			△7,766,883,891	△61.29	△3,107,648,895	△71.97

이 중 (곡물)사료용(HSK : 1005901000)의 경우 2011년 대비 수입증량이 약 98% 감소하였다. 사료용 곡물 품목이 감소한 사유는 2011년 기준 미국(1위)이 해당 품목 최대 수입국이었으나 2013년 브라질(1위)과 아르헨티나(2위)가 대체 수입국으로 바뀌어 미국(7위)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두번째 7년균등철폐의 경우 앞서 80.25%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나 32개 품목 중 1개 품목인 기타 옥수수(HSK : 1005909000)가 단일품목 증량비중이

4% 이상을 차지하여 7년균등철폐 유형의 증감현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옥수수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31개 품목에 대해서는 8.79%의 증가율을 보였으므로 한-미 FTA 체결로 증가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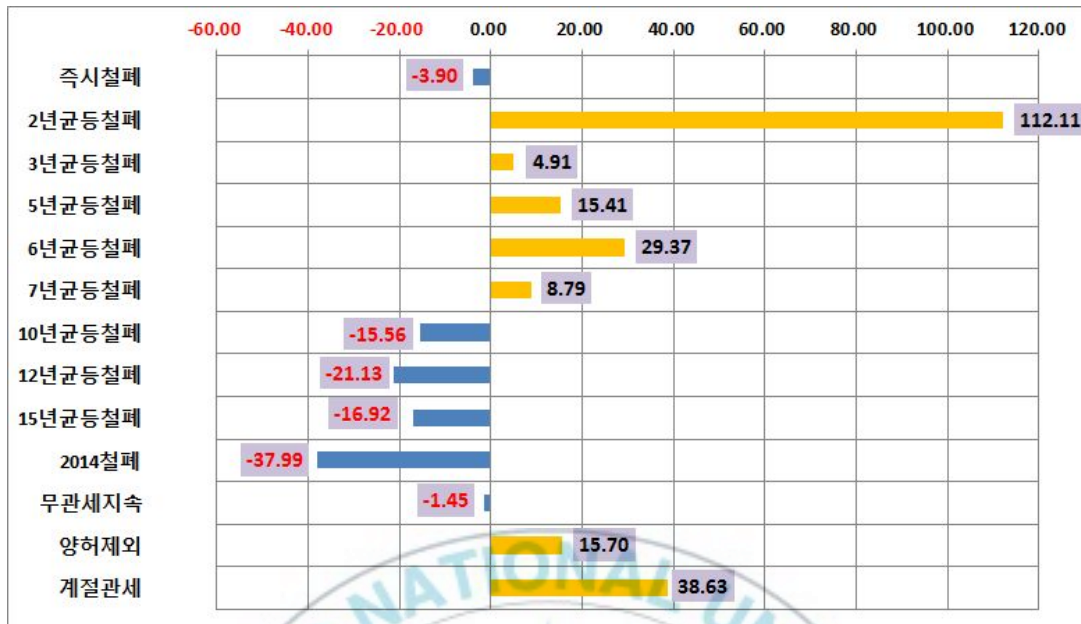
세번째, 12년균등철폐의 경우 장기철폐임에도 불구하고 교역량이 증가하였는데 해당 유형의 전체 21개 품목을 살펴본 결과 동물성 생산품 기타(HSK : 0504001090) 1개가 전체 품목 중 금액기준 7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수입증감액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을 제외해 보면 전체 교역량이 오히려 23.07% 감소하였다. 1개의 예외품목을 제외하면 12년균등철폐도 교역량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2> 양허유형별 수입증량 및 수입액 증감여부(일부품목 제외 후)

양허유형	품목수	양허유형 별 품목비율	수입증량 증감량(kg)	수입증량 증감비율(%)	수입금액 증감액(\$)	수입금액 증감비율(%)
즉시철폐	5101	68.45	△328,887,240	△4.46	△490,804,393	△3.90
2년균등철폐	5	0.07	7,371,501	89.70	17,191,180	112.11
3년균등철폐	535	7.18	△72,521,292	△15.40	250,941,752	4.91
5년균등철폐	383	5.14	△1,810,360	△ 0.92	168,586,568	15.41
6년균등철폐	1	0.01	741,613	8.21	23,492,001	29.37
7년균등철폐	31	0.42	2,151,646	7.73	4,849,925	8.79
10년균등철폐	338	4.54	△290,301,272	△34.78	△264,021,864	△15.56
12년균등철폐	20	0.27	△1,423,729	△34.79	△1,682,568	△21.13
15년균등철폐	46	0.62	△19,558,899	△25.83	△67,258,893	△16.92
2014철폐	18	0.24	△46,334,678	△30.65	△172,270,280	△37.99
무관세지속	959	12.87	△47,665,945	△3.07	△99,227,444	△1.45
양허제외	14	0.19	46,126,889	27.61	22,634,771	15.70
계절관세	1	0.01	1,809,632	31.37	5,596,389	38.63
합계	7452	100	△750,302,134	△6.90	△601,972,856	△2.11

이렇게 단일품목이 전체 증감량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큰 일부품목을 제외한 양허 유형의 증감율을 살펴보면 <표4-12>과 같다.

<그림 4-1> 양허유형별 대미 교역액 증감 현황



<표 4-12> 및 <그림 4-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2,046개 품목을 제외하고 남은 7,452개 품목의 증감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품목은 2.11%가 감소하였다.

이 중 양허제외와 계절관세 유형을 제외하고 2년·3년·5년·6년·7년균등철폐 유형의 경우 수입금액비율이 증가하였다.

특이할만한 것은 즉시철폐의 경우 전체 5,105개 품목 중 4개 품목을 제외한 5,101개 품목의 수입금액 증감율은 기존 21% 감소에서 3.9% 감소로 감소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즉시철폐 유형에서는 관세가 발효됨과 동시에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액이 감소하였다. 이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관세율이 낮거나 우리나라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하는 품목에 대해서 즉시철폐를 양허해 줘서 교역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7년균등철폐의 경우는 1차 제외까지만 해도 80.25% 감소를 기록하던 것과 달리 수입금액 비율이 오히려 약 8.8% 증가를 기록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011년과 2013년 대미 수입 교역액 변화를 양허유형별로

살펴보면 품목전체를 분석해 보았을 때와 처음 2,040개 양허유형을 알 수 없는 품목과 TRQ, 비선형 유형을 제외하고 분석했을 때는 2년·3년·5년·6년균등철폐 유형이 한-미 FTA 체결 이후 교역액 증가를 보였다.

두 번째, 일부 단일품목이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은 품목 6개를 제외하고 분석해 보았을 때는 앞서 분석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2년에서 6년균등철폐 유형의 경우 교역량이 증가하는 것은 앞서 분석한 내용과 같이 나타났는데 이와 더불어 7년균등철폐 유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보더라도 한-미 FTA 체결 후 관세 양허유형에 따른 교역량 변화에서 단기(2년·3년·5년균등철폐)~중기철폐(6년·7년균등철폐) 유형은 FTA로 인해 교역액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단기철폐와 중기철폐의 경우 장기철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2년에서 7년균등철폐 유형의 경우에는 교역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양허유형에 따른 품목별 교역량 증감 분석

제3절에서는 HSK 10단위 기준 대비 수입품목을 HSK 2단위 기준으로 묶어 증감변화를 살펴보고 각 양허유형별 증감에 영향을 미친 HSK 10단위 기준 품목의 교역량 증감 변화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당초 예상한 바와 달리 즉시철폐의 경우 전체 교역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 사유를 품목별로 들여다보고 세부품목이 교역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교역액이 증가한 3년·5년균등철폐 유형의 경우도 세부품목별 증감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뿐만 아니라 비선형철폐, TRQ, 계절관세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양허유형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다.

4.3.1 즉시철폐 유형

즉시철폐유형에서 HSK 2단위 기준 품목별 수입금액 증감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을 살펴보면 <표 4-13>과 같다.

<표 4-13> 즉시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가 상위 10개 품목

(단위 : %)

순위	HSK	품명	품목 수	수입증량 증감량(kg)	수입증량 증감비율	수입금액 증감액(\$)	수입금액 증감비율
1	84	보일러 기계류	515	△6,039,433	△12.8	189,375,992	12.3
2	39	플라스틱	161	45,728,235	42.5	176,850,689	31.5
3	73	철강제품	82	5,166,908	29.2	172,900,008	58.3
4	20	채소/과실의조제품	8	43,303,433	55.6	73,331,299	70.2
5	74	동과그제품	56	8,271,584	275.5	71,764,448	127.3
6	41	원피 가죽	34	△8,410,835	△5.5	44,102,077	10.1
7	32	염료,안료,페인트,잉크	112	22,349,461	53.7	41,921,883	18.8
8	08	과실, 견과류	19	1,749,906	7.3	29,343,022	20.5
9	03	어패류	10	△44,715	△66.5	18,993,112	3,223.6
10	34	비누,계면활성제,왁스	24	1,370,418	24.1	18,648,213	52.1

즉시철폐 유형에서는 보일러 기계류, 플라스틱, 철강제품의 수입금액 증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유형에서는 오히려 수입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즉시철폐, 3년·5년·10년균등철폐, 무관세지속 유형에서는 전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품목(HSK 87)에서 대부분의 수입이 5억87백만 달러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과 철강제품의 경우 전체품목과 유사하게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어패류의 경우는 앞에서 일부 우리측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장기철폐를 하여 교역량이 줄었으나 어패류 전체는 즉시철폐를 포함하여 교역량이 증가하였다.

<표 4-14> 즉시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가 하위 10개 품목

(단위 : %)

순위	HSK	품명	품목 수	수입증량 증감량(kg)	수입증량 증감비율	수입금액 증감액(\$)	수입금액 증감비율
83	76	알루미늄과 그제품	42	△3,910,390	△2.2	△41,367,824	△9.9
84	62	의류(편물제이외)	155	△466,922	△48.3	△46,764,145	△51.2
85	90	광학·의료·측정·검사, 정밀기기	243	△891,041	△10.8	△62,391,345	△4.7
86	85	전기기기, TV, VTR	328	△79,181,934	△60.5	△79,746,909	△6.5
87	28	무기화합물	288	19,830,993	6.4	△101,958,854	△17.7
88	23	조제사료	20	△462,497,524	△63.1	△104,072,187	△43.7
89	52	면/면사,면직물	79	△20,891,669	△19.6	△221,879,071	△54.9
90	72	철강	30	△707,706,872	△25.1	△587,751,893	△40.5
91	27	광물성연료,에너지	83	△805,480,812	△10.2	△1,105,538,805	△42.0
92	10	곡물	10	△6,019,270,382	△98.3	△2,020,941,113	△98.8

즉시철폐 유형에서 교역액이 감소한 품목으로는 곡물과 광물성연료, 에너지, 철강이 하위 1, 2, 3위를 기록하였다. 곡물의 경우 사료용 곡물(1005901000)과 제분용 곡물(1001909030)이 각각 1,514백만 달러, 495백만 달러 감소로 2011년 대비 2013년에 98%와 100% 감소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4.3.2 3년균등철폐 유형

3년균등철폐 유형에서 수입금액 증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의료용품의 경우 의료용품이 포함된 즉시철폐, 무관세지속 유형보다 3년균등철폐 유형에서의 증가액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의료용품(3004909900)과 항결핵제·구충제·항암제 의료용품(3004901000)의 경우 교역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의료용품의 경우 즉시철폐, 무관세지속, 3년균등철폐 3가지 양허유형이 있는데 이중 무관세지속 유형의 경우 수입액이 1억1700만 달러 증가하여 무관세지속 유형 중 상위 2위를 차지하였으며, 즉시철폐 유형에서는 HSK 2단위 기준 92개 품목 중 594만 달러 증가로 18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미 FTA 체결함에 있어 우리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3년균등철폐 유형, 즉시철폐 유형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보일러 기계류의 경우 교역액이 증가하였다.

<표 4-15> 3년균등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가 상위 10개 품목

(단위 : %)

순위	HSK	품명	품목수	수입증량 증감량(kg)	수입증량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액(\$)	수입금액 증감비율
1	30	의료용품	24	240,313	12.1	133,849,492	43.5
2	39	플라스틱	20	17,993,883	17.0	108,649,480	26.8
3	84	보일러 기계류	150	△3,981,896	△9.6	63,924,400	3.2
4	76	알루미늄과 그제품	9	6,288,711	57.1	38,438,741	40.1
5	33	향료, 화장품	22	849,282	6.6	25,123,190	16.1
6	34	비누, 계면활성제, 왁스	11	△357,131	△1.5	21,290,260	24.6
7	68	석,시멘트석면제품	2	△1,349,453	△14.3	11,455,953	89.7
8	95	완구, 운동용품	3	12,917	1.5	7,890,368	20.2
9	71	귀석, 박귀석, 귀금속	7	24,442	45.6	6,043,463	9.9
10	94	가구류, 조명기구	4	59,772	17.8	4,369,811	81.9

하위 10개 품목을 살펴보면 즉시철폐 유형에서는 철강제품이 증가량 상위권에 있었는데 3년균등철폐 유형에서는 증가량 하위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철강제품의 경우 무관세지속, 즉시철폐, 3년균등철폐 유형에 속해 있는데 무관세지속이나 즉시철폐 유형에서는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나 3년균등철폐에서는 7개 품목 중 스프링(7320909000), 철강기타(7318290000) 2개 품목의 교역량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3년균등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가 하위 10개 품목

(단위 : %)

순위	HS K	품명	품목 수	수입증량 증감량(kg)	수입증량 증감비율	수입금액 증감액(\$)	수입금액 증감비율
38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1	△938,678	△100.0	△5,969,304	△100.0
39	57	양탄자	2	△846,200	△63.8	△6,287,353	△74.0
40	82	비금속 제공구, 스푼/포크	16	△243,985	△41.7	△7,972,341	△28.7
41	32	염료, 안료, 페인트, 잉크	5	△4,870,342	△61.8	△8,421,746	△30.4
42	73	철강제품	7	△274,104	△61.6	△10,426,956	△29.9
43	70	유리	6	△13,385,306	△53.8	△11,586,701	△47.1
44	55	인조 스테이플 섬유	1	△2,847,785	△42.4	△13,361,372	△35.3
45	90	광학·의료, 측정·검사, 정밀기기	49	1,166,354	46.0	△35,150,654	△5.8
46	37	필름인화지, 사진용재료	12	△339,300	△39.2	△49,477,945	△65.9
47	29	유기화합물	15	△50,513,824	△76.7	△64,224,477	△53.0

4.3.3 5년균등철폐 유형

5년균등철폐 유형에서는 기타 조제식료품의 교역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플라스틱과 곡물빵류가 뒤를 잇고 있다.

<표 4-17> 5년균등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가 상위 10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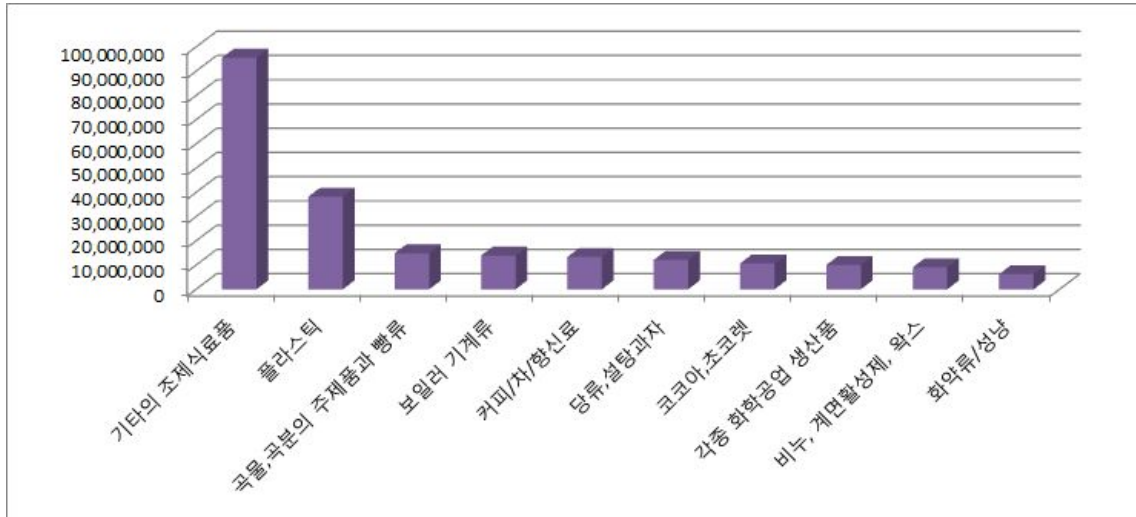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HSK	품명	품목 수	수입증량 증감량(kg)	수입증량 증감비율	수입금액 증감액(\$)	수입금액 증감비율
1	21	기타의 조제식료품	37	△286,614	△1.1	95,539,321	28.8
2	39	플라스틱과 그제품	14	4,721,899	74.6	38,225,751	36.9
3	19	곡물,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23	1,009,096	8.3	14,886,897	31.6
4	84	보일러 기계류	11	△289,762	△20.8	13,921,418	27.8
5	09	커피·차·향신료	6	1,013,249	48.8	13,326,839	48.7
6	17	당류,설탕과자	18	4,682,659	34.7	12,099,272	46.7
7	18	코코아,초코렛	16	1,175,978	8.6	10,664,105	13.1
8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물	12	1,089,212	31.7	10,067,615	44.3
9	34	비누,계면활성제,왁스	14	767,918	4.9	9,060,227	15.2
10	36	화약류·성냥	1	355,082	385.5	6,257,912	4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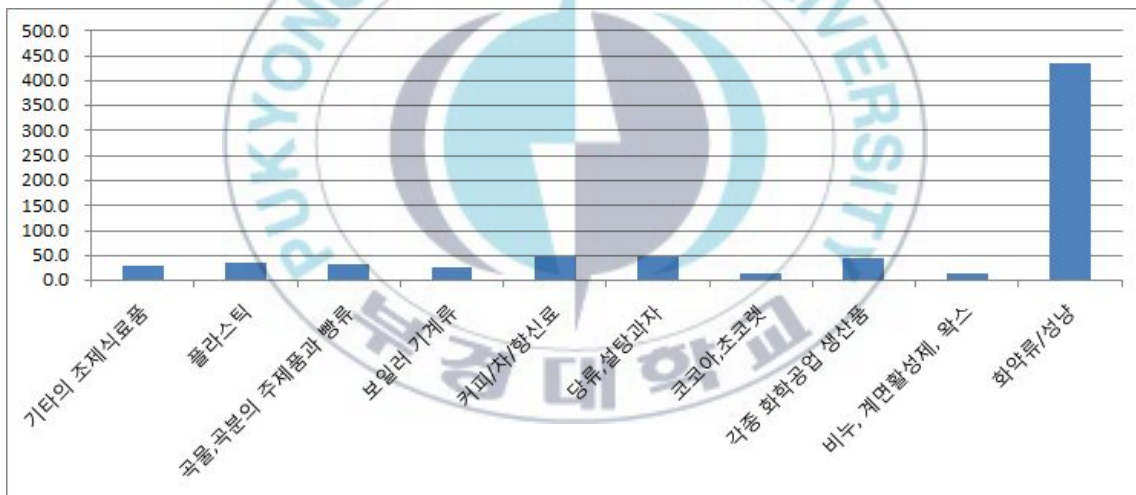
기타 조제식료품의 경우 다른 양허유형도 있지만 전체 71개 품목 중 37개 품목이 5년균등철폐 유형이다. 뿐만 아니라 이 중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조제식료품(2106909099) 1개 품목의 증가액이 전체 증가에 99%이상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SK 10단위 기준으로 분석하여도 수입업자가 신고 시 기타 조제식료품 중 분류되지 않는 모든 품목을 기타로 할 경우 정확히 어떤 품목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어떠한 품목이 어떠한 이유로 크게 증가했는지에 대한 분석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림 4-2> 상위 10개 품목 교역액 증가량



<그림 4-3> 상위 10개 품목 교역액 증가율



위 <그림 4-3>에서 보면 5년균등철폐의 경우 전반적으로 교역액 증가율이 50% 이내를 보이고 있으나 화약류·성냥 품목의 경우 435%가 증가한 것은 특이하다 할 수 있겠다. 이는 HSK 36 중 무연화약(3601002000) 품목이다.

5년균등철폐 유형에서 수입금액이 감소한 하위 품목을 보면 어패류는 감소율 100%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11년 수입되던 품목이 2013년에는 하나도

수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으로는 정어리, 은대구, 명란, 바다가재, 어패류 기타 품목까지 6개 품목이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품목 수출입 현황(국가별)’에서도 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어패류가 갑자기 왜 수입이 되지 않았는지는 좀 더 연구해봐야 할 것이다.

<표 4-18> 5년균등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가 하위 10개 품목

(단위 : %)

순위	HSK	품명	품목 수	수입증량 증감량(kg)	수입증량 증감비율	수입금액 증감액(\$)	수입금액 증감비율
37	74	동과그제품	1	△2,256	△66.5	△1,615,348	△61.2
38	44	목재 목탄	30	△1,072,365	△49.2	△1,698,781	△30.7
39	20	채소/과실의조제품	40	△1,818,520	△10.0	△2,009,962	△6.7
40	76	알루미늄과 그제품	2	△301,979	△9.5	△2,179,464	△8.7
41	37	필름인화지, 사진용재료	2	△202,576	△100.0	△3,119,051	△99.3
42	10	곡물	4	△5,433,356	△96.5	△4,687,599	△60.4
43	54	인조 필라멘트 섬유	3	△88,073	△34.6	△5,246,285	△33.5
44	01	산동물	9	△185,183	△95.2	△9,676,525	△83.7
45	03	어패류	6	△6,951,802	△100.0	△19,529,393	△100.0
46	29	유기화합물	8	△10,921,932	△38.4	△27,967,308	△40.2

4.3.4 7년균등철폐 유형

7년균등철폐 유형의 경우 앞에 제4장 제1절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HSK 10단위 기준으로 전체 품목에 대한 수입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년균등철폐 유형은 HSK 10단위 기준으로 32개 품목이 해당된다. 이 중 곡물은 2가지 품목이 있는데 이 중 곡물 기타(HSK 1005909000) 품목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대체수입이 나타나 3억5,600백만 달러 이상 감소했다. 반면에 7년균등철폐 품목 중 곡물 팝콘(HSK 1005902000)

의 경우는 기준세율 630%에서 180%가 감소한 450% 관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대비 2013년 수입액이 5,558달러 증가하여 118.0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세율대비 관세 감소폭이 커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곡물 2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전체의 경우 7년균등철폐 유형은 수입액이 708천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미 FTA가 발효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비교적 관세인하 효과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9> 7년균등철폐 유형 품목별 증감 현황

(단위 : %)

순위	HSK	품명	품목수	수입증량 증감량(kg)	수입증량 증감비율	수입금액 증감액(\$)	수입금액 증감비율
1	08	과실, 견과류	4	848,678	20.4	2,078,435	10.4
2	22	음료,주류,식초	1	480,015	5.4	1,155,420	20.6
3	17	당류,설탕과자	2	△203,386	△6.1	400,391	10.5
4	35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 효소	2	209,096	42.0	303,277	45.3
5	16	육/어류,조제품	1	8,137	8.2	193,564	25.9
6	07	채소	4	△183,912	△68.5	115,791	67.4
7	15	동식물성,유지	2	25,776	71.1	69,748	64.3
8	23	조제사료	1	7	0.1	17,459	19.6
9	20	채소/과실의조제품	7	△984,444	△72.5	△1,587,316	△52.5
10	02	육과, 식용설육	2	△558,325	△38.3	△1,597,242	△44.0
11	21	기타의 조제식료품	4	320,506	23.9	△1,858,232	△14.6
12	10	곡물	2	△1,093,159,987	△92.6	△356,490,281	△90.3
합계			32	△1,093,197,839	△91.0	△357,198,986	△80.3

4.3.5 10년균등철폐 유형

10년균등철폐 유형은 HSK 10단위 기준으로 348개³⁰⁾ 품목이 해당되며 HSK 2단위 기준으로는 39개 품목이 해당된다.

<표 4-20>을 살펴보면, 10년 균등철폐에서는 향료, 화장품이 수입금액 증가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향료, 화장품의 경우 HSK 10단위 기준으로 즉시철폐 34개, 3년균등 22개, 5년·10년균등철폐 각 1개 품목이 있다. 화장품의 경우 모든 양허유형에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년 균등철폐는 기초화장품류인데 증가액이 4천6백만 달러로 전체 화장품 품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3년균등철폐에서 증가액 기준 5위를 차지한 향료, 화장품 품목인 HSK 10단위 기준 샴푸, 향수, 치약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화장품의 경우 관세철폐가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10년균등철폐인 장기철폐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 및 국내 수요 증가로 인해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10년균등철폐 유형에서 수입 증가액 2위를 보이는 담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0년~15년 균등철폐로 양허되었다. 그러나 황색종(HSK 2401201000), 판상엽(HSK 2403911000), 버어리종(HSK 2401202000)에서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담배류의 수입액이 증가했음을 나타냈다.

3위를 차지한 보일러 기계류의 경우 즉시철폐 유형과 무관세지속 유형에서는 가장 높은 증가액을 나타냈으며, 3년, 5년, 10년균등철폐 유형에서도 각 3위, 4위, 5위의 증가액을 나타냈다. 이는 한-미 FTA에서 보일러 기계류가 수혜품목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30) 348개는 양허유형을 알 수 없는 수입 품목은 제외한 품목 수입

<표 4-20> 10년균등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가 상위 10개 품목

(단위 : %)

순위	HSK	품명	품목 수	수입증량 증감량(kg)	수입증량 증감비율	수입금액 증감액(\$)	수입금액 증감비율
1	33	향료, 화장품	1	1,287,256	22.7	46,474,238	28.9
2	24	담배	18	3,715,229	247.1	30,046,300	256.1
3	84	보일러 기계류	41	△1,882,035	△21.8	21,398,320	6.4
4	08	과실, 견과류	11	7,291,402	110.2	15,784,302	110.8
5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2	△402,719	△15.1	9,591,245	73.0
6	35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 효소	8	△728,540	△23.5	6,134,330	21.2
7	21	기타의 조제식료품	15	813,416	21.0	4,994,386	45.0
8	11	곡물의분과, 조분말가루, 전분	10	2,695,347	843.0	4,808,738	806.7
9	22	음료,주류,식초	6	3,918,869	63.9	4,067,103	32.6
10	07	채소	19	1,947,856	35.9	2,481,860	59.3

10년 균등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가 하위 10개 품목 중에는 우리측에서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양허기간을 장기철폐로 정한 어패류가 포함되어 있다. 어패류 HSK 10단위 기준 42개 품목 중 11개 품목을 제외한 31개 품목에서 수입액 감소를 나타냈다. 대표적으로 홍어(0303799093), 임연수어(0303799060), 멍장어(0303799092), 민대구(0303780000) 순으로 함께 1천8백23만 달러 수입이 감소했다. 어패류의 경우 즉시철폐, 3년균등철폐 유형에서는 수입액 증가가 나타났고, 5년균등철폐, 10년균등철폐의 경우 수입액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우리측에서 한-미 FTA 체결로 수입에 영향을 미칠 민감품목에 대해 장기철폐 유형으로 협정을 맺은 성과라 할 수 있겠다.

<표 4-21> 10년균등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가 하위 10개 품목

(단위 : %)

순위	HSK	품명	품목 수	수입증량 증감량(kg)	수입증량 증감비율	수입금액 증감액(\$)	수입금액 증감비율
30	41	원피 가죽	1	△430,645	△70.5	△1,105,211	△63.4
31	01	산동물	2	△160,454	△100.0	△1,807,731	△100.0
32	68	석,시멘트석면제품	4	△1,522,046	△37.9	△4,565,311	△81.5
33	90	광학·의료·측정·검사, 정밀기기	7	△229,531	△25.1	△6,077,423	△6.3
34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13	△2,568,916	△90.9	△8,546,495	△80.5
35	40	고무와 그제품	6	648,336	6.8	△10,097,460	△22.8
36	03	어패류	42	△7,373,420	△97.9	△16,139,340	△83.5
37	39	플라스틱과 그제품	10	△33,152,828	△41.7	△34,058,744	△26.8
38	02	육과, 식용설육	9	△45,399,313	△47.1	△77,297,315	△43.5
39	29	유기화합물	22	△229,210,163	△40.3	△256,282,263	△46.1

증가액 하위에 포함되어 있는 육과, 식용설육의 경우는 10년균등철폐 유형에서 뿐만 아니라 즉시철폐와 2014년철폐를 포함하여 7년, 10년, 12년, 15년균등철폐 유형에서도 수입액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미국산 돼지고기, 소고기에 대한 수요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4.3.6 12년균등철폐 유형

12년균등철폐 유형에 포함되는 품목은 HSK 10단위 기준 22개 품목이 해당된다. HSK 2단위 기준으로는 8개 품목으로 분류된다. 육/어류,조제품의 경우 2011년에는 대미 수입이 전혀 없다가 2012년부터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미 FTA 체결로 무역창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해 본다.

12년균등철폐 유형에서는 동물성 생산품 기타(0504001090) 품목 1개에서 2백842천달러의 수입액 증가를 보였다. 채소의 경우 12년균등철폐 유형에서는 수입액 증가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즉시철폐(1백13만 달러), 5년(2백42만 달러), 10년균등철폐(2백48만 달러)를 포함한 전 유형에서 수입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표 4-22> 12년균등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감 품목 현황

(단위 : %)

순위	HSK	품명	품목 수	수입증량 증감량(kg)	수입증량 증감비율	수입금액 증감액(\$)	수입금액 증감비율
1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1	△427,510	△6.7	2,842,111	13.8
2	16	육·어류,조제품	3	10,398	-	154,535	-
3	20	채소·과실의조제품	2	△21,289	△28.5	17,372	20.9
4	18	코코아,초코렛	2	19	316.7	229	416.4
5	07	채소	3	13	1,300.0	46	1,150.0
6	08	과실, 견과류	3	△533,781	△27.3	△328,080	△18.3
7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3	△535,015	△34.6	△724,570	△16.4
8	02	육과, 식용설육	5	△344,071	△67.3	△802,016	△47.8

4.3.7 15년균등철폐 유형

15년균등철폐 유형에서는 과실, 견과류 및 기타 동물성 생산품에 대해 수입액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의 경우 10년균등철폐 유형에서는 3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액 증가를 보였는데 15년균등철폐 유형에서는 필터담배 (2402201000) 품목에서 2천709달러 수입증가가 나타났다.

15년균등철폐 유형 중 가장 수입이 줄어든 품목은 육과, 식용설육 품목이다. 이것은 15년균등철폐 유형의 수입 감소분을 100으로 봤을 때 97.2%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표 4-23> 15년균등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감 품목 현황

(단위 : %)

순위	HSK	품명	품목 수	수입증량 증감량(kg)	수입증량 증감비율	수입금액 증감액(\$)	수입금액 증감비율
1	08	과실, 견과류	6	300,411	53.6	2,591,808	157.0
2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4	413,386	18.8	1,321,492	21.2
3	07	채소	9	645,903	751.4	562,766	182.8
4	11	곡물의분과, 조분말가루, 전분	5	27,962	64.7	286,947	157.6
5	20	채소·과실의조제품	2	△27,369	△6.4	75,147	5.8
6	22	음료,주류,식초	1	17,000	-	22,712	-
7	24	담배	2	36	22.4	2,709	23.7
8	10	곡물	2	125	215.5	709	91.6
9	13	식물성, 엑스	3	0	0.0	218	38.2
10	12	채유용,종자·인삼	6	△8	△27.6	△70	△16.7
11	09	커피·차·향신료	4	△6,065	△86.4	△34,179	△43.8
12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4	△11,930	△93.8	△350,898	△99.0
13	16	육·어류·조제품	4	△478,426	△100.0	△2,434,859	△99.9
14	02	육과, 식용설육	6	△19,878,247	△27.6	△68,858,962	△17.9

4.3.8 무관세지속 유형

무관세지속 유형은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부터 관세가 없었던 품목으로 한-미 FTA 발효가 교역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유형이다.

무관세지속 유형은 HSK 2단위 기준으로 29개 품목으로 분류된다. HSK 10단위 기준으로는 959개 품목이 있다. 이 중 교역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앞에서 말한 즉시철폐 유형과 마찬가지로 보일러 기계류 품목으로 교역액이 2억7,770만 달러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의료용품이 1억1,768만 달러가 증가했다.

<표 4-24> 무관세지속 유형 수입금액 증가 상위 10개 품목

(단위 : %)

순위	HSK	품명	품목 수	수입증량 증감량(kg)	수입증량 증감비율	수입금액 증감액(\$)	수입금액 증감비율
1	84	보일러 기계류	177	10,170,253	89.3	277,738,269	60.8
2	30	의료용품	39	332,706	25.2	117,683,618	39.0
3	29	유기화합물	41	34,560,836	24.8	93,674,054	43.9
4	28	무기화합물	11	26,228	100.0	55,309,327	167.2
5	73	철강제품	64	△2,866,155	△19.7	34,728,691	23.6
6	38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16	265,848	15.4	26,326,777	11.4
7	85	전기기기, TV, VTR	91	891,536	29.9	18,274,383	6.9
8	23	조제사료	2	36,488,572	7,423.5	13,207,557	4,970.3
9	81	기타의 비금속	4	△19,670	△7.9	7,089,596	25.4
10	95	완구, 운동용구	17	467,184	38.4	6,571,324	50.3

교역량이 감소한 품목으로는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품목이다. 총 90개 품목으로 이 중 58개 품목이 감소를 나타냈는데 대부분이 반도체 제조용 부품이었다. 이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반도체 부품 수입이 감소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반도체의 경우 FTA 비혜택 품목군으로 美마이크론의 日엘피다 인수로 부품 공급선이 일본 공장으로 전환되어 미국으로부터의 직접수입이 감소한데 기인한다.³¹⁾

31) 한국조세연구원(2013), 전거서, p.104

<표 4-25> 무관세지속 유형 수입금액 증가 하위 10개 품목

(단위 : %)

순위	HSK	품명	품목 수	수입증량 증감량(kg)	수입증량 증감비율	수입금액 증감액(\$)	수입금액 증감비율
20	97	예술품, 골동품	12	△46,344	△50.1	△6,029,219	△13.3
21	48	지와 판지	134	2,702,256	2.6	△12,469,718	△8.2
22	86	철도차량	7	△1,111,488	△32.2	△14,608,778	△33.2
23	94	가구류, 조명기구	41	116,665	6.3	△23,314,573	△44.8
24	72	철강	81	△1,400,317	△8.7	△24,463,539	△25.4
25	49	서적·신문인쇄물	29	△1,712,904	△30.3	△28,323,484	△22.9
26	74	동과그제품	4	△7,550,760	△17.9	△101,926,460	△30.3
27	47	펄프	20	△119,718,246	△10.0	△137,600,966	△27.2
28	88	항공기	26	△39,444	△1.9	△199,286,593	△9.2
29	90	광학·의료, 측정·검사·정밀기기	90	△555,187	△19.8	△203,465,955	△14.7

4.3.9 2014철폐 유형

2014철폐 유형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한-미 FTA가 2011년과 2013년 대미 수입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2014년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을 살펴보면 HSK 10단위 기준으로 모두 18개 품목이다. 이 중 육·어류 조제품과 육과, 식용설육이 각각 7개, 11개 품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철폐 품목 중 돼지고기 기타(0203299000, 삼겹살 제외)의 경우 1억6,840만 달러의 교역액 감소가 나타났으며, 소고기 기타(0206499000) 품목에서 1천258만 달러의 교역액 감소가 나타났다. 이것은 한-미 FTA가 체결될 당시 광우병으로 인해 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며 FTA 발효 후에도 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심리 위축 및 수요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4-26> 2014철폐 유형 수입금액 증감 품목 현황

(단위 : %)

순위	HSK	품명	품목 수	수입증량 증감량(kg)	수입증량 증감비율	수입금액 증감액(\$)	수입금액 증감비율
1	16	육·어류,조제품	7	659,491	59.3	4,531,703	79.2
2	02	육과, 식용설육	11	△46,994,169	△31.3	△176,801,983	△39.5

4.3.10 양허제외 유형

양허제외 유형의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곡물류에 대해서 우리 측이 강경하게 주장하여 반영된 것이다. 특히 농업분야에 대한 우려가 큰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그러나 세부 품목별 교역량 변화를 살펴보면 HSK 2단위 기준 곡물의 경우 양허제외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이 2천만 달러 증가했다. HSK 10 단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6개 품목의 곡물류 중 멥쌀(1006301000)이 3천493만 달러 증가하였다. 반면에 현미(1006201000, 1006202000)와 찰쌀(1006302000)은 1천493만 달러 감소를 보였다. 이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은 한-미 FTA 체결후 양허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쌀이 많이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허제외 유형의 경우 멥쌀 수입의 증가로 인해 전체적으로 품목의 교역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27> 양허제외 유형 수입금액 증감 품목 현황

(단위 : %)

순위	HSK	품명	품목 수	수입증량 증감량(kg)	수입증량 증감비율	수입금액 증감액(\$)	수입금액 증감비율
1	10	곡물	6	47,239,950	30.4	20,000,217	15.9
2	11	곡물의분과, 조분말가루, 전분	4	△1,121,611	△9.4	2,573,109	13.8
3	19	곡물,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2	8,554	50.4	61,485	43.2
4	18	코코아,초코렛	2	△4	△80.0	△40	△59.7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FTA의 양허유형 및 관세율 변화가 교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2011년과 2013년의 한-미 FTA 대미 수입 물동량 사례를 실증자료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FTA 체결의 궁극적 목표는 관세철폐이나 FTA 협정 체결 시 당사국 간 산업 품목별 비교우위를 반영하여 관세철폐 기간을 달리한다. 기본적으로 양국의 산업에 상대적 영향을 덜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 즉시철폐 유형 및 단기철폐 유형에 포함시키고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장기철폐 유형에 포함시킨다. 한-미 FTA에서는 다른 교역국가와의 FTA 협정보다 더 다양한 11개의 공통양허유형과 13개의 개별양허유형으로 모두 2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관세철폐 기간이 짧은 양허유형의 경우 평균관세율이 낮았으며 10년 이상 장기철폐유형의 경우 보다 높은 평균관세율을 나타냈다. 이는 기준세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수입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이므로 관세 우선철폐 유형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미 FTA 체결 후 관세 양허유형에 따른 교역량 변화에서 즉시철폐를 제외한 단기(2년균등철폐, 3년균등철폐, 5년균등철폐)유형과 중기철폐(6년균등철폐, 7년균등철폐) 유형은 FTA로 인해 교역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관세율이 낮거나 우리나라 교역량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에 대해서 즉시철폐를 양허해 줘서 교역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단기철폐와 중기철폐의 경우 장기철폐

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2년에서 7년균등철폐 유형의 경우에는 교역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양허유형에 따른 품목별 교역량 현황에서는 같은 HSK 2단위라도 다양한 양허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기타 동식물생산물(HSK 05)의 경우 10가지의 양허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2단위 기준 품목에서는 단기철폐 유형이라고 해서 교역량 증가를 나타내고 장기철폐 유형이라고 감소를 나타내는 패턴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한-미 FTA 체결 전인 2011년과 체결 후인 2013년 대미 수입 교역액을 기준으로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난 품목은 HSK 2단위 기준으로 자동차, 플라스틱과 그제품, 의료용품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미 FTA 체결 시 주요 쟁점이 되었던 곡물(HSK 10)의 경우 다른 품목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과 식용설육의 경우는 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국내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국내 공급증대 등으로 축산물 수입 감소가 그 원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각 양허유형별 교역량 분석 결과 보일러 기계류의 경우 즉시철폐 유형과 무관세지속 유형, 3년균등철폐, 5년균등철폐, 10년균등철폐 유형에 포함되어 있는데 전 유형에서 교역액 증가율 상위를 기록하여 한-미 FTA 최대 수혜품목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외에도 플라스틱 품목의 경우도 10년균등철폐를 제외한 즉시철폐, 3년균등철폐, 5년균등철폐 유형에서 증가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체결 시 우리측 가장 큰 쟁점 사항이었던 곡물과 소고기, 돼지고기, 민감 수산물 품목에서는 우려할 만한 교역량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대미 무역수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미 FTA 체결로 한-미 간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은 감소하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까지는 한-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한-미 FTA가 체결된 지 만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으나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 연구해 본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성과는 앞으로 FTA 체결과 관련하여 교역량 증감패턴을 분석·예측하거나 향후 추진될 FTA 협상 전략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한-미 FTA가 2012. 3.15일 발효되었으나 FTA가 체결된 것은 2007년4월이었다. 그러므로 HSK2002 기준으로 관세양허표가 작성되어 2011년과 2013년 교역량을 HSK 10단위 기준으로 파악하면서 약 20%의 품목에 대한 양허유형이 파악이 되지 않아 제외시켰다. 제외 품목을 관세 양허유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쉬우며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2011년과 2013년만을 기준으로 교역량을 분석하여 다른 연도의 교역량 변화가 고려되지 못하였으며 교역량 변화요인은 양허유형이나 관세율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문화, 경제적 요인이 있음이 분명하나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외부 요인이 고려되지 못했다.

또한 양허유형에서 중요한 부분인 관세율의 변화에 따른 품목별 교역량 변화를 분석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대미 수입 품목별 교역량을 관세 양허 유형별로 단순히 정량적 관점에서 순수 교역액 증감 현황을 중심으로 한-미 간 FTA 체결 효과를 살펴보았다. 향후 한-미 FTA 체결 이후 시계열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면 다양한 외부 요인을 고려하여 한-미 FTA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양허유형별 교역량 변화를 분석한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전찬영·이수영·정경선(2013), 「FTA가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해돈(2013.), 「한·미 FTA 체결과 비준과정에서의 쟁점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용진(201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제약기업의 글로벌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기찬·남형식·강달원(201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부산항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 대 칠레 수입 컨테이너화물 중심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7권 제6호 pp.681~682
- 김영귀·서진교·김종덕·이승래·강준구·김혁황·이준원·이주미(2013), 「한·미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영귀·이효영·강준구·김혁황(2014), 「한·미 FTA 2년의 이행 현황과 성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윤소영(2014), 「한-미 FTA 발효 2년 관세철폐 단계에 따른 보건산업 수출입 효과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시욱(2006), 「한·미 FTA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 김종범(2009), 「한-미 FTA 상품협정의 양허균형에 대한 고찰」, 통상법률, 통권 제85호
- 문병철(2011), 「한·미 FTA 의미와 향후 보완대책 : 미국 비교우위 품목, 내수업종 중심으로 피해 클 듯」, 국회보 통권 541호
- 안용덕(2013), 「한·미 FTA 발효 1년간 주요성과」,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고일훈·임수주·장선영·김태균·권오승·최명례·전미성·안중익·이명희(2013), 「한

미 FTA 발효 1주년, 대미 수출 성과 분석」, KOTRA
이정선·김현범·이병탁(2014), 「한미 FTA 발효 2년 대미 수출 성과 분석」,
KOTRA
한국조세연구원(2013), 「한·미 FTA 발효 1년간 주요 성과」
한상완·이준협(2014), 「경제주평-2015년 한국경제의 주요 특징과 경제전망」,
현대경제연구원, 통권 610호
김근용(2007), 「한미FTA 체결의 배경과 국토발전 전략」, 도시문제 제42권
제464호
조연희(2007), 「한·미 FTA 추진전략과 무역구제분야에 대한 대응방안」, 건
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정숙(200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순천향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소영(2014), 「한-미 FTA 발효 2년 관세철폐 단계에 따른 보건산업 수출입
효과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홍식·이창수·이경희(2006),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김진석(2007), 「한·미 FTA의 진행현황과 대응전략 : 국내 각 산업 분야에 미
치는 영향, 문제점 및 대응책」,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관련 자료

외교통상부(2011),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정부관계부처 합동(2012), 「한·미 FTA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협정문”
정부합동, “한·미 FTA의 오해와 진실”
대한민국정부(2012), 「알기쉬운 한·미 FTA」
외교통상부(2011), 「한·미 FTA, 보도자료/브리핑 모음집」
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2011), 「한·미 FTA 주요 쟁점과 대응」
외교통상부(2007),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2011), 「한미 FTA 주요 쟁점과 대응」
산업연구원(2006), 「한·미FTA 체결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기획재정부, 「통상강국으로 가는 길: 한·미 FTA」

3. 온라인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FTA 포털, <http://www.customs.go.kr>
한·미 FTA, <http://www.fta.go.kr/us>
FTA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 <http://ftahub.go.kr>
국회전자도서관, <http://dl.nanet.go.kr>
외교부, <http://www.mofa.go.kr>